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2011 연차보고서





2011년을 돌아보면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안정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무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 중 발생한 16개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였습니다.

영업 정지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가지급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신설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지원을 실행하였으며, 영업 정지된 상호저축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가교저축은행 이전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저축은행 정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정리 과정에서 공사가 인수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하여 지원 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과거 투입된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공사는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 확대와 금융감독원과 대형·계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시적인 공동검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중 공사는 TV·신문·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2011년 중 공사가 수행한 노력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금년에는 공사 업무와 예금보험제도의 내용이 더욱 충실히 반영되도록 편제와 수록 내용 등을 대폭 개선하여 각계 각층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최고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견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금융 불안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주현

Contents

본|문|차|례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1
제2장	조직 운영	13
	제1절 조직 구성	14
	제2절 조직 관리	20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33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34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40
제4장	예금자보호제도 선진화	45
	제1절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46
	제2절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조사연구	50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52
제5장	리스크 관리	59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60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66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71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72
	제2절 부실금융기관 매각 및 계약이전	77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수자산 관리	82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87
제1절 파산재단 관리	88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93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97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98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00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04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06
제9장 기금 관리	111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2
제2절 예금보험기금	123
제10장 2011년도 결산	133
제1절 결산 개요	134
제2절 결산 기준	135
제3절 결산 현황	141
부 록	155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56
2. 대외평가	159
3. 2011년도 주요 일지	160
4. 통계	161

Contents

표|차|례

〈표 I - 1〉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3
〈표 I - 2〉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16개사) 정리 현황	4
〈표 I - 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6
〈표 I - 4〉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9
〈표 I - 5〉 2011년 중 금융경제교육 추진 실적	9
〈표 I - 6〉 2011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10
〈표 I - 7〉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11
〈표 II -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15
〈표 II - 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15
〈표 II - 3〉 2011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16
〈표 II - 4〉 임원	18
〈표 II - 5〉 인원 현황	19
〈표 II - 6〉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23
〈표 II - 7〉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24
〈표 II - 8〉 2011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9
〈표 II - 9〉 1단계(2011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31
〈표 III - 1〉 예금보험제도 홍보 메시지 및 이미지	35
〈표 III - 2〉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37
〈표 III - 3〉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	37
〈표 III - 4〉 2011년 금융경제 교육 추진 실적	39
〈표 III - 5〉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43
〈표 IV -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련 예금자보호법 주요 내용	47
〈표 IV - 2〉 2011년 주요 조사연구	50
〈표 IV - 3〉 2011년 주요 발간물	51
〈표 IV - 4〉 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전파 실적	57
〈표 V - 1〉 2011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64
〈표 V - 2〉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 · 추가 · 수정 내역	67
〈표 VI - 1〉 2011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73

〈표VI- 2〉 20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인력 투입 현황	74
〈표VI- 3〉 예금담보대출 알선 개선사항	75
〈표VI- 4〉 예금담보대출 알선 실적	76
〈표VI- 5〉 2011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79
〈표VI- 6〉 부실저축은행 정리기간 비교	80
〈표VI- 7〉 2011년 중 일괄매각(Package) 계약이전 현황	81
〈표VI- 8〉 부산계열 저축은행 영업목적별 SPC 대출 잔액	82
〈표VII- 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89
〈표VII- 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91
〈표VII- 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92
〈표VII- 4〉 2011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93
〈표VII- 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94
〈표VII- 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95
〈표VIII- 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102
〈표VIII- 2〉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2
〈표VIII- 3〉 부실금융기관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103
〈표VIII- 4〉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104
〈표VIII- 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5
〈표VIII- 6〉 부실채무기업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105
〈표VIII- 7〉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법적조치 현황	107
〈표VIII- 8〉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107
〈표VIII- 9〉 연도별 신고센터 접수건수,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현황	108
〈표IX- 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113
〈표IX- 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113
〈표IX- 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114
〈표IX- 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114
〈표IX- 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115
〈표IX- 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1년)	116

Contents

표|차|례

〈표IX- 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16
〈표IX- 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117
〈표IX- 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118
〈표IX-10〉 상환기금의 회수(2011년)	119
〈표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119
〈표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121
〈표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	122
〈표IX-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124
〈표IX-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124
〈표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125
〈표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개정 채권 발행 및 상환	125
〈표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126
〈표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1년)	127
〈표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27
〈표IX-21〉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	128
〈표IX-22〉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1년 및 누계)	129
〈표IX-23〉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129
〈표X- 1〉 요약 재무상태표(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45
〈표X- 2〉 요약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146
〈표X- 3〉 요약 재무상태표(예금보험기금)	147
〈표X- 4〉 요약 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148
〈표X- 5〉 요약 재무상태표(공사회계)	149
〈표X- 6〉 요약 손익계산서(공사회계)	150
〈표X- 7〉 요약 재정상태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1
〈표X- 8〉 요약 재정운영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2

그림 차례

〈그림 I - 1〉 가지급금 지급시기 단축	3
〈그림 I - 2〉 가지급금 지급한도 확대	3
〈그림 I - 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5
〈그림 I - 4〉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적	7
〈그림 II - 1〉 조직도	19
〈그림 II - 2〉 KDIC 성과관리체계도	26
〈그림 II - 3〉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체계도	27
〈그림 II - 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1~2013)	30
〈그림 III - 1〉 알림장	35
〈그림 III - 2〉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등 조사 결과	36
〈그림 III - 3〉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신청 현황	41
〈그림 V - 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적	63
〈그림 VI - 1〉 제3자 계약이전 정리방식 체계도	78
〈그림 VI - 2〉 가교금융기관을 통한 정리방식 체계도	79
〈그림 VI - 3〉 정리단계별 자산관리 전담 체계	84
〈그림 VI - 4〉 특수자산 정리 절차 예시	85
〈그림 VII - 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92
〈그림 VIII - 1〉 위법·부당행위자 책임추궁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01



미션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비전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Sub-Vision

예금보험서비스
글로벌 리더

국내 최고수준의
기금 관리자

공공기관 지속가능
경영의 선도자

핵심가치

Challenge

Confidence

Creativity

경영이념

정도추구

가치창출

고객중심

고객중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 능동적인 예금자 보호 서비스 실현
-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

기금관리체계의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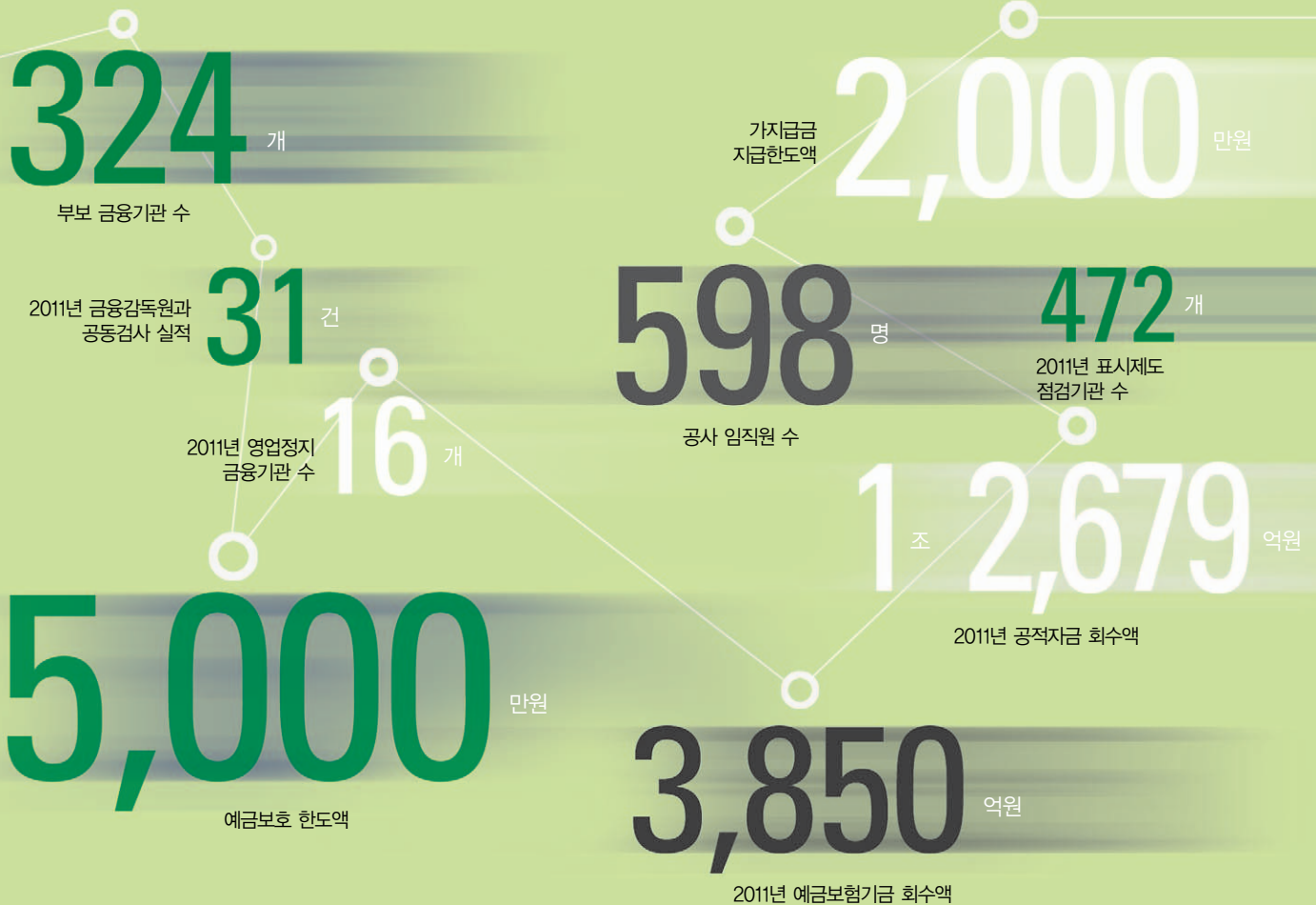
-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위험 관리
-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
- 엄정하고 효과적인 부실책임 추궁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역동적 조직 구축
-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제고
- 예금보험업무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제1장

주요 추진 업무



KDIC

공사는 2011년 중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 최소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였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경영관리와 예금보험금 지급 및 계약이전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안에서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가자금금의 지급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가자금금 지급한도도 확대하는 등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조기에 매각하는 한편, 가교 저축은행을 활용함으로써 부실저축은행 정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부실저축은행이 보유한 SPC 자산을 신속히 회수하여 예금자 및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특수자산부)를 설치하고 자산 관리 및 회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및 단독조사 등 부실 감시 및 위험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해 공사가 보유 중인 출자금용기관 지분을 매각 하였고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예금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 최소화

공사는 2011년 중 영업 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금융위원회의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와 동시에 대규모 경영관리 인력을 신속히 투입(관리인 17명, 감독관 402명)하여, 영업정지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예금자의 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다.

〈표 I -1〉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2011. 1. 14	2011. 2. 17	2011. 2. 19	2011. 2. 23	2011. 8. 5	2011. 9. 18
저축은행	삼화	부산, 대전	부산2, 전주, 중앙부산, 보해	도민	경은	대영, 프라임에이스, 토마토, 제일, 제일2, 파랑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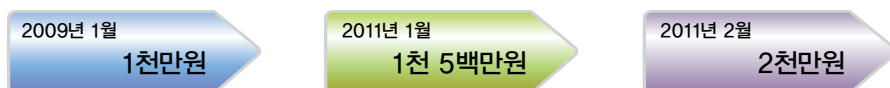
또한 공사는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모든 영업점에 인력을 파견하여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을 설치하여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예금자의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켰으며, 이를 통해 금융제도 안정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거래 중단으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자금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하였고, 가자금금 지급한도도 기존의 두 배인 2천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농협으로 국한된 가자금금 지급대행기관을 대형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예금자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였다.

〈그림 I -1〉 가자금금 지급시기 단축



〈그림 I -2〉 가자금금 지급한도 확대



아울러, 가지급금 이외에 추가로 긴급 생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하여 본인의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의 인근 은행에서 예금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최대 4천 5백만원(예금 보호한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가 금융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11년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예금 보호한도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개산지급금 형태로 파산배당금을 우선 지급 함으로써 예금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정리

공사는 2011년 대규모로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예금자보호와 금융 제도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였다.

특히, 부실저축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와 병행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수행을 위해 영업정지와 동시에 제3자 매각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리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중 영업 정지된 8개 부실저축은행과 8월 5일 영업 정지된 경은저축 은행은 제3자 또는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완료하였고, 2011년 9월 18일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들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표 1-2〉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16개사) 정리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삼화	제일 ¹⁾	토마토 ¹⁾	프라임 파랑새 ¹⁾	부산2, 중앙부산, 도민	대영 ²⁾	대전	전주, 보해	부산, 경은	에이스, 제일2 ¹⁾
	↓	↓	↓	↓	↓	↓	↓	↓	↓	↓
인수기관	우리 금융	매각 추진중	매각 추진중	매각 추진중	대신 증권	현대 증권	에나래 (가교)	에쓰 (가교)	예솔 (가교)	매각 추진중

주 : 1) 제일 → KB금융, 토마토 → 신한금융, 프라임 · 파랑새 → BS금융, 에이스 · 제일2 → 하나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대영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M&A를 통해 정상화

또한 공사는 이러한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지원된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일괄매각(Package)을 병행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함으로써 신속한 정리를 통한 정리 비용 절감 및 부실저축은행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의 적기조달, 지원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삼화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등으로 약 12.6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였다.

* 예금보험금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예금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그림 1-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구조



〈표 1-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조달 및 지원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8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예금보험금, 개산지급금, 출연 등	7.7	계정 간 차입	1.8
			국내은행 등 차입	10.4
경은 등 8개 저축은행	가지급금, 예금보험금 등	4.9	예금보험료 등	0.4
합 계		12.6	합 계	12.6

특히 특별계정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계정 간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 이외에 국내은행 등과 총 15조원의 차입한도 약정(상반기 5.3조원, 하반기 9.7조원)을 체결하여 자금 소요 발생 시 적기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11년 12월부터 정부 보증 없이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을 발행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부채의 만기구조도 안정화하였다.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특별계정 포함)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1년 중 파산배당금 등으로 총 3,850억원을 회수하였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특수자산 회수 극대화

2011년에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영업정지는 부동산 PF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경기둔화에 따라 동 PF대출 채권의 부실이 가속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공사는 2011년 상반기에 영업 정지된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영관리 과정에서 동 저축은행이 약 4.1조원을 건설, 선박 및 해외개발 등 120여개의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통해 불법 투자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공사는 신속한 조직개편을 통해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PF대출 채권 및 SPC 관련 자산의 관리·회수를 전담할 특수자산부를 신설하였으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SPC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SPC 주주 및 임원의 임의적인 지분 매각을 방지하고 수익금 회령을 차단하기 위하여 SPC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였다. 이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

에서 투입한 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채권보전 조치 이외에도 공사는 SPC의 사업장별 특성 및 사업 추진정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

공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과 정보공유 MOU를 체결하고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속보 등 4건의 정보를 추가 제공 받음으로써 48건의 정기보고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9건이 추가되어 1,279건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공사는 독자적인 리스크 상시감시 모형을 운영하여 부보금융기관의 재무현황 변동 및 잠재 리스크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는 대표적인 현장점검 활동으로써 2011년도에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림 I -4〉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적



그 외에도 적기시정 조치가 부과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징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저축은행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유도하였다.

한편, 2011년 중 영업 정지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소홀과 비리 유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테스크포스팀(T/F)’이 구성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2011.9.2)이 마련되었다.

동 혁신방안에 따라 대형·계열 저축은행(매년 검사)에 대해서는 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BIS 비율 5% 미만의 저축은행에 한정되었던 공사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가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인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도입·예정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외부전문가 및 학계 의견 등을 바탕으로 차등평가 모형 개선(안) 및 제도 운영방안(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 직원 및 유관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준비 외부 합동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관련 공청회도 개최(2011.12.22)하여 동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대주주 및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

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및 동 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실 채무기업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은닉재산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예금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2011년에 영업 정지된 부산 등 16개 저축은행과 관련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의 형사책임을 규명할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검 중수부 산하에 구성한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에 전문 조사인력을 파견하는 등 검찰과 부실관련자에 대한 수사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동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조사 중에 있다.

이러한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임직원 및 부실 채무기업 주주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부실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 예금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직후 대주주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 조기에 채권보전 조치를 취해 책임재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은닉 재산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재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별도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의 조사·환수를 촉진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표 I-4〉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필지, 건)

구 분	발견재산		채권보전조치 현황		
	금융자산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금융자산	부동산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80	439	85	357	6
부실채무기업 주주 등	480	2,966	187	880	-
합 계	560	3,405	272	1,237	6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구현

공사는 고령자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과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 주요 도시 중심의 지역 민영방송(TV) 및 신문, 라디오와 극장,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예금 보호한도 등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 직원 및 일반인에 대해서도 예금보험제도 안내 방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표 I-5〉 2011년 중 금융경제교육 추진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명)

구 분	전통시장 등	초등학교	고령자	금융기관 임직원 등	합 계
실 시	247	174	9	23	453
대상 인원	29,630	21,725	7,320	1,520	60,195

한편, 공사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 중 총 472개 부보금융기관 영업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예금보험 관계 성립 여부 및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등에 대한 표시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공적자금의 차질없는 상환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 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 중 총 58.4조원을 정부출연금(45.7조원)과 회수자금 등(12.7조원)으로 2011년 말까지 상환(70.9%)하였다. 잔여 부채 24조원도 회수자금과 특별기여금 등으로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 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2011년 중에만 출자금용기관 지분 매각, 배당금 수령 및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총 1조 2,679억원을 회수하였다.

공사 보유 신한금융지주 잔여물량(0.61%)은 2011년 7월 전량 블록 세일하여 1,486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제주은행 지분은 장내거래를 통해 보유 지분 0.64%를 매각하여 8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미상환잔액도 2011년 7월 3,414억원 전액을 회수하였다.

〈표 I -6〉 2011년 중 주요 공적자금 회수내역

신한금융지주	2011.7월, 보통주 블록세일(0.61%)로 1,486억원 회수
제주은행	2011.1월~12월, 보통주 장중매각으로 8억원 회수
서울보증보험	2011.7월, 상환우선주 미상환잔액(3,414억원) 회수
케이알앤씨(舊 정리금융공사) 보유주식	2011.2월, 한국증권금융 공개경쟁입찰로 324억원 회수 2011.3월, 한국금융안전 공개경쟁입찰로 41억원 회수 2011.7월~12월, SG세계물산 지분 장중매각을 통해 1억원 회수
파산재단	2011.1월~12월, 파산배당금으로 3,585억원 회수

공사는 이와 같이 공적자금의 차질 없는 상환을 위하여 보유 중인 주요 출자금용기관 지분에 대한 지속적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매각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타 보유 지분도 개별주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상황 및 주가 추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블록세일 또는 장내거래 등의 방법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는 지분 보유 출자금용기관과 체결한 MOU에 의거하여 출자 지분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MOU 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해당 출자금용기관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표 1-7〉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총지원액	기 회수액 ¹⁾	잔여지분 평가액 ²⁾	공사 지분율
MOU 체결	우리금융	127,663	55,040	43,302	56.97
	수 협	11,581	-	9,300	우선출자증권
	서울보증	102,500	20,773	1,361	93.85
대 한 생 명		35,500	13,115	15,907	24.75
제 주 은 행		2,182	294	211	18.48
합 계		279,426	89,222	70,081	-

주 : 1) 지분 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

2) 상장주식은 2011년 12월말 종가기준, 비상장주식은 2011년 말 공사 결산서 기준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제2장

조직 운영

제1절 조직 구성

제2절 조직 관리

제1절 조직 구성

1. 예금보험위원회 및 이사회

가.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1인과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공사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의 수립,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기금 계정간의 거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지정,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 예금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결정, 정리금융기관과 부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공동검사 참여 요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표Ⅱ-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11년 12월말 현재)

구 성		성 명
당연직 위원	예 금 보 험 공 사 사 장	이 승 우
	금 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추 경 호
	기 획 재 정 부 차 관	신 제 윤
	한 국 은 행 부 총 재	이 주 열
위촉직 위원	금 융 위 원 회 위 촉	윤 창 현
	한 국 은 행 총 재 추 천	안 세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추 천	김 성 배

〈표Ⅱ-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의 결	- 공사 정관의 변경 -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 -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 -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 -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지원 -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송부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 -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
	결 정	- 부실금융기관의 판정 - 부실우려금융기관의 판정 - 기금 계정간의 거래 -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 -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 -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 - 가지급금의 지급 -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지원 등의 예외 인정
	심 의	- 기금운용계획 -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
	지 정	- 여유자금의 운용 -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 - 예치 대상 부보금융기관의 지정
보 고 사 항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

〈표Ⅱ-3〉 2011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의안 목록

일 자	처 리 안 건
1.24	•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및 계정간 거래안
1.31	• 2010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 2011년도 공동검사 참여 요청안 •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계정간거래 내역 등 보고 • (인천)에이스, (광주)대한, (서울)신안, (청주)청주, (광주)동양 상호저축은행 공동검사 결과 • 대한생명보험(주) 공동검사 결과
2. 9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안
2.25	•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안 •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을 위한 계정간 거래 및 부보금융회사 차입안 • 2010 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공사 회계의 결산안 • 2010년도 운영경비 정산결과 보고
3. 9	• 삼화상호저축은행 일부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삼화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 삼화상호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금호종합금융(주)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3.30	• 상호저축은행계정 자산 및 부채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의 이전안 •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중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의 보험료 수입비율 결정안 •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계정간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적립액 목표규모 재설정안 • 우리금융지주(주), 우리·광주·경남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 경영정상화 계획 추가안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일부개정 합의서안
4.13	•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 2010년도 4/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4.27	• (부산)부산, (부산)부산2, (서울)중앙부산, (대전)대전 및 (전북)전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 결과
5.11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계정간차입금 이자감면안 • 부산,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삼화 상호저축은행 정리채권 마련을 위한 상호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차입안 • 2011년도 예금보험공사 추가경정예산안 • (주)전북은행 공동검사 결과
6. 8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계정간차입금 이자감면 및 유예안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서울보증보험(주) 경영정상화계획 추가안

일 자	처 리 안 건
6. 29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계획안 및 동 채권에 대한 국가의 채무보증 신청안 (울산)경은 및 (서울)신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7. 13	- 목표규모 상한 초과 계정(금투, 생보, 손보)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 면제 결정안 2011년도 1/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
8. 8	- 경은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안 - 경은상호저축은행 정리재원 마련을 위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차입안
8. 17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외부자금 차입안 2011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8. 31	-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수정안 2011회계연도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반기결산 결과
9. 19	-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안 - 경은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9. 30	2011년도 2/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한화손보 공동검사 결과
10. 12	- 경은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경은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10. 26	2011년도 하반기 저축은행 공동검사 결과
11. 11	- 프라임, 대영, 제일, 제일2,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결정안 - 무보증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안
11. 17	- 부산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부산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주)케이알앤씨에 대한 상환기금 대출약정서 일부개정안
12. 23	2012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 토마토·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일부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안 - 토마토·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 초과 예금등 채권의 매입 및 개산지급금 지급안 2012년도 예금보험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3/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 미래에셋생명(주) 공동검사 결과보고

나. 이사회

이사회는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 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표Ⅱ-4〉 임원

(2011년 12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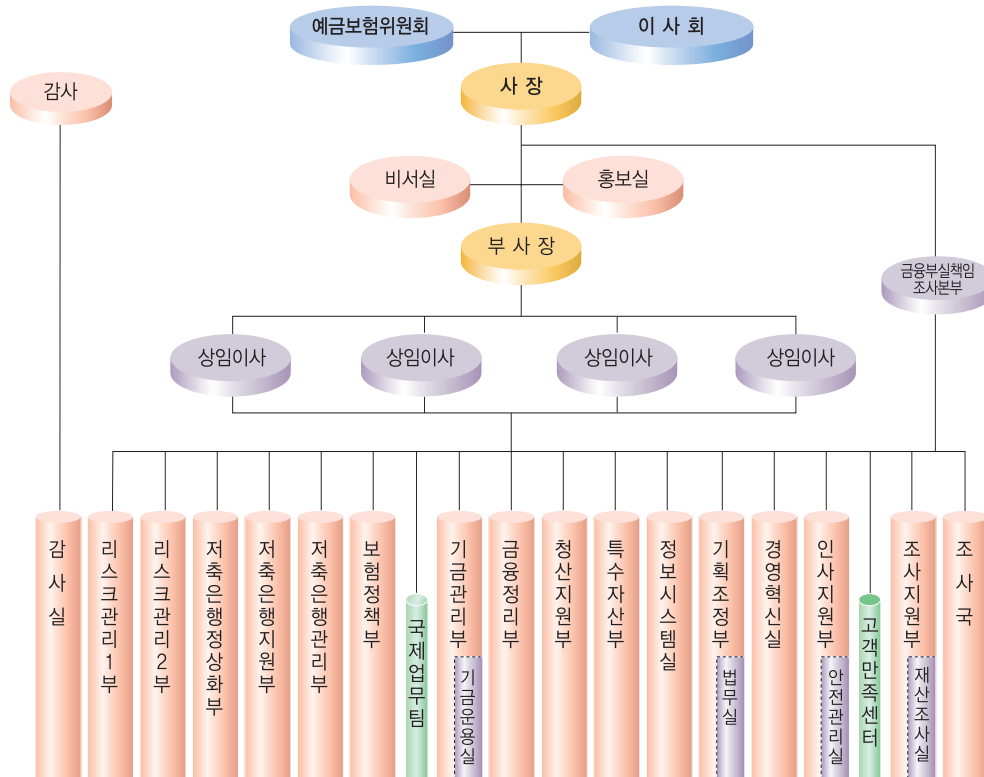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사 장	이 승 우
부 사 장	이 원 태
상 임 이 사	김 정 태
상 임 이 사	진 상 근
상 임 이 사	최 효 순
상 임 이 사	조 현 철
비상임이사	정 찬 우
비상임이사	김 석 진
비상임이사	한 정 길
비상임이사	이 수 화
비상임이사	이 기 석
비상임이사	오 창 석
비상임이사	김 교 식
감 사	이 상 목

2. 조직 일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12월말 현재 기획조정부, 인사지원부, 리스크관리1부, 리스크관리2부, 저축은행관리부, 저축은행지원부, 저축은행정상화부, 보험정책부, 기금관리부, 금융정리부, 청산지원부, 특수자산부, 정보시스템실, 경영혁신실, 홍보실, 비서실, 감사실 및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12부 5실 1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1〉 조직도

(2011년 12월말 현재)



* 국제업무팀 및 고객만족센터는 팀급

〈표 II-5〉 인원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인원, 단위 : 명)

구 분	인 원	직 원		
		일반직	별정직 ²⁾	합 계
인 원	14 ¹⁾	443	141	584

주 :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비상임이사 7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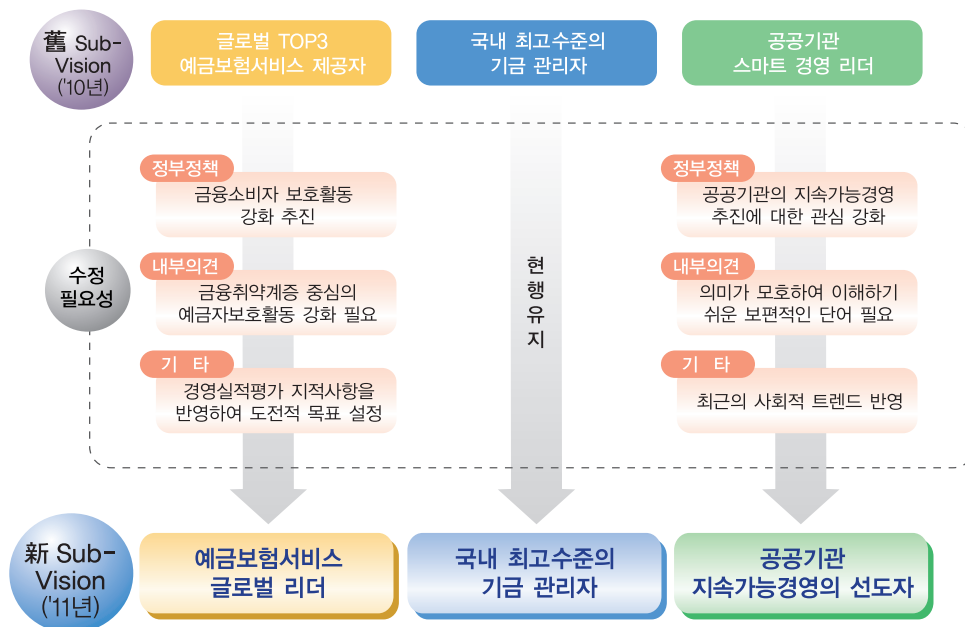
2) 변호사, 박사 등 전문직과 경영관리인, 파산관재인 및 검사인력 등 특정직

제2절 조직 관리

1. 비전, 중장기 경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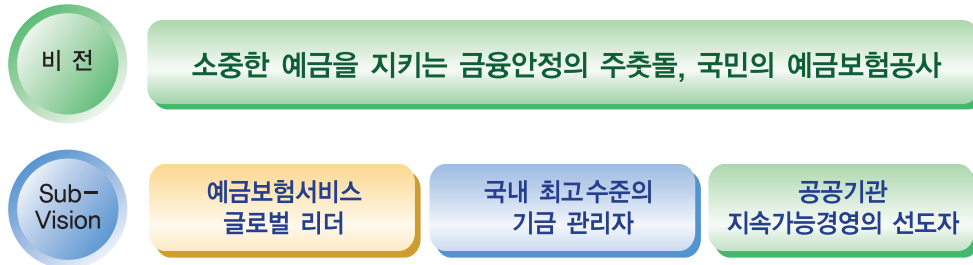
가. 새로운 서브 비전의 수립 추진 배경

공사는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발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새로운 서브 비전을 2011년 10월에 수립하였다.



나. 비전 체계

(1) 비전 및 Sub-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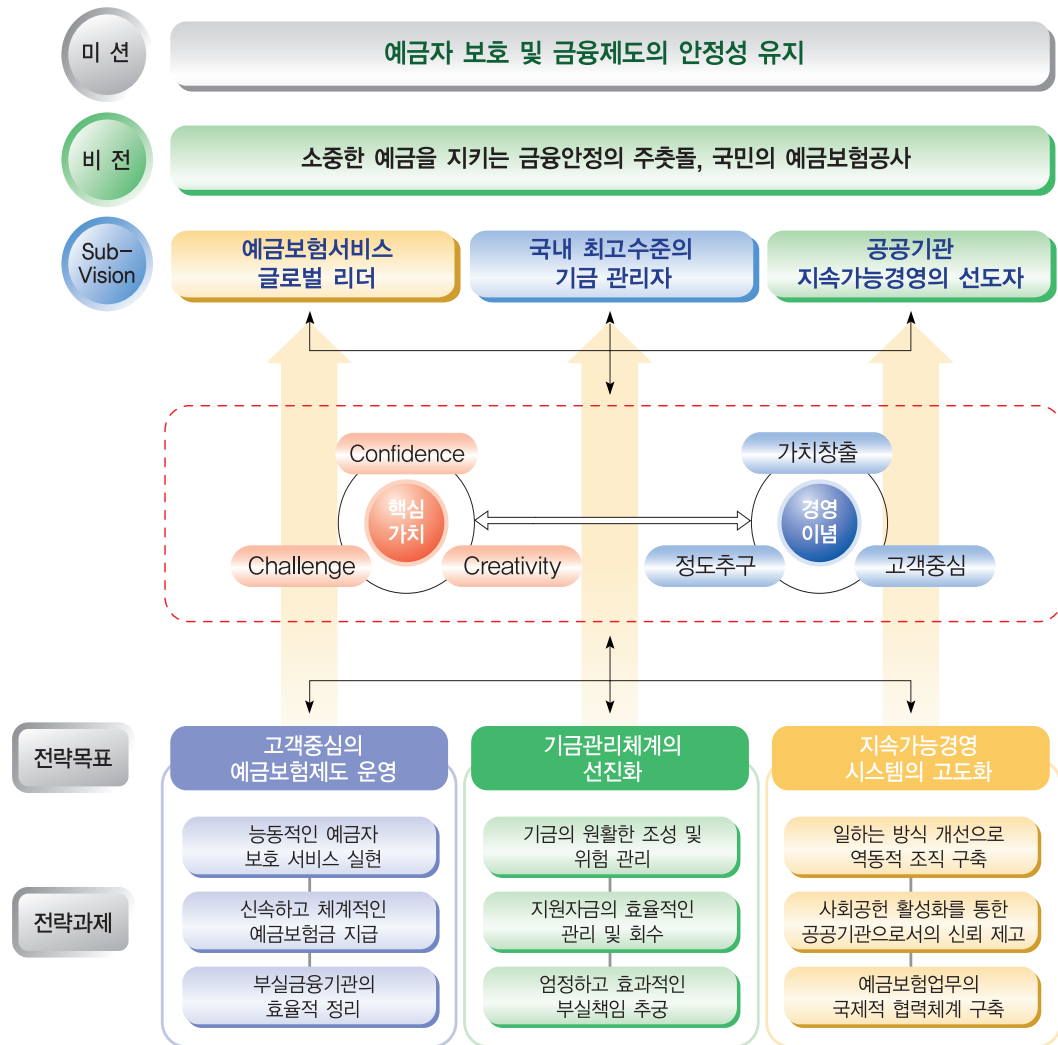


(2) 비전 정의

비전 문구	구분	내용
소중한 예금	사업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기관의 금융상품(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 등”)
지키는	사업 양식	예금보험이라는 공적 보험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이를 법적·윤리적인 기준에 맞게 행사
금융안정	달성 목표	예금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주춧돌	역할 설정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예금보험제도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존립 기반	공사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사업이 국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존립 기반이 국민임을 명확히 함



(3) 비전 및 경영목표 체계도



다. 전략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공사는 비전을 달성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3대 전략목표로 ‘고객중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기금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의 고도화’로 설정하고,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9대 전략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도 5년간(2012~2016)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표II-6〉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전략과제	2012년 세부 추진계획
고객중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능동적인 예금자보호 서비스 실현	- 예금보험제도 개선 노력 - 차등보험료율제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 - 예금보험제도 안내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 해소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 - 신속·효율적인 부실저축은행 정리 및 제도개선 추진
기금관리 체계의 선진화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위험 관리	-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 관리 -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균형관리 - 리스크 감시 역량 강화 - 저축은행 리스크 요인의 조기 파악 및 대응 - 리스크 분석 및 대·내외 서비스 제공 강화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	-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노력 -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노력 - 보유 지분 및 자산의 효율적 매각 추진 - MOU 관리 효율성 제고 - 특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극대화
	엄정하고 효과적인 부실책임 추궁	-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 건전경영 풍토조성을 위한 부실책임추궁 노력 강화 - 위법·부당행위자 사후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역동적 조직 구축	- 핵심 업무 중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절감 - 인력관리 효율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보수제도 운영 - 성과관리 제도의 적정성 제고 - IT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제고	-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금융 교육 강화 - CS경영시스템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예금보험업무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예금보험업무 추진 - 해외 예금보험기구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운영성과 전파

2. 역동적인 인사, 조직문화 구현

가.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하이-KDIC」 프로그램 실시

공사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친절한 대국민 서비스(Hi)’와 ‘공사의 위상 및 역량 강화(High)’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하이-KDIC」 프로그램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통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 및 ‘다함께 실천’을 「하이-KDIC」 프로그램의 3대 실행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축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가 공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의 주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Ⅱ-7〉 하이-KDIC 주요 프로그램

실행과제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2011년 실적
소통 활성화 (전방위 소통)	무비 데이	업무성과가 우수한 팀을 “이달의 팀”으로 선정하여 해당 팀원에게 영화관람 기회 제공	22회
	스마트 보드	직급별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보드를 구성하여 “쌍방향 의사 소통 채널”로 적극 활용	수시회의 개최
	복(福) 타임	스마트 보드가 경영전략회의에서 직원의견 수렴내용을 직접 전달	8회
	제안의 창	구성원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토론방 운영	95건
	멘토링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직원이 신입직원을 전담하여 일정기간 지도	신입 : 45명 대학생인턴 : 41명 청년인턴 : 22명
	탕데이 및 호프데이	격월(탕데이), 분기별(호프데이) 임원진과 직원간 혹은 부서장과 평직 원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제공	56회
공감대 형성 (행복한 일터)	북 릴레이	본인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피추천자에게 간략한 메모와 함께 선물 함으로써, 전사적인 독서경영의 계기 마련	24회
	해피 나잇	경영진이 직원 사기진작 제고 및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야간근무 실시 부서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행사	7회
	KDIC-Highway 연수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직급 직원으로 팀을 구성 하여 문화체험, 극기훈련 등의 연수 실시	4개팀 (19명)
	Follow-up 연수	입사 5년차 이상 직원들의 유대감 강화 및 리더십 등 역량강화를 도모	1회(23명)
	가정의 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정시퇴근을 유도하여 가정 친화 및 자기계발 촉진	매주 수요일
다함께 실천 (핵심가치 공유)	정책설명회	임원 또는 부서장이 공사의 주요정책에 대해 전 직원에게 설명·공유	20회
	KDIC-다움	핵심가치의 주요내용 및 실천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체화하는 교육형 워크숍 프로그램	8회
	스카이미팅	기관장이 직원들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미팅실시	12회
	K-Oasis	지식경영 관련 지식포털시스템 운영	연중 운영
	파고 TV	경영이념, 경영전략회의, 홍보/보도자료 등 경영전략 공유를 위한 VOD서비스 제공	연중 운영

나. 예금보험기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

공사는 2011년 1월 저축은행업권의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7월 부실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에 따른 특수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수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능조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통합과 재조정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의 신축성과 업무 처리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는 등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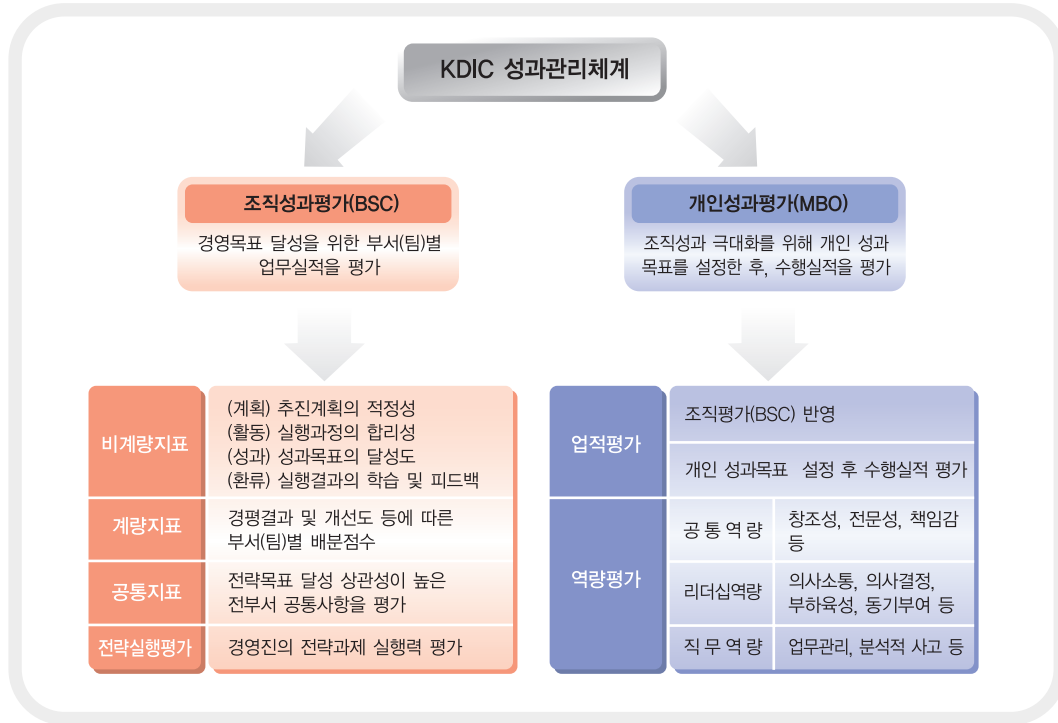
다.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년 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BSC)를 도입하고 2006년 부서 단위, 2007년 팀 단위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관련 전산시스템도 개발하였다. 또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조직 성과평가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전략달성과 상관성이 높은 지표 위주로 공통지표를 설정하고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 제고 및 직원인 피평가자의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 비계량지표의 1차 평가를 외부전문가에 위탁하였고 성과관리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성과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적극 도모하였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발맞추어 피평가자인 개인이 평가자와 협의하여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한 업무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수행 실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개인성과평가제도를 2011년 구축하여 시행하였다.



〈그림 II-2〉 KDIC 성과관리체계도



3.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가. 윤리경영

공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정도추구’를 경영이념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에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동시에 윤리경영 4대 전략과제도 설정하였다. 또한 동 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실천 하기 위하여 13개의 추진과제와 세부적인 추진항목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1년은 그 동안의 윤리경영 기반을 바탕으로 매월 윤리경영 자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윤리 경영 사이버 연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 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UN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2007년 8월 가입)에 이행상황 보고 및 지식경제부 주관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KoBEX SM) 참여, 윤리경영 평가지수 개선

등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1년 6월 1일에는 기존 '윤리경영의 날'을 '청렴·윤리경영의 날'로 확대·변경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사가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림II-3〉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전략 체계도



나. 사회공헌 활동

(1)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공사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소외 이웃에 대한 나눔 및 봉사 활동 이외에 '업무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SMART 생활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그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 발전시켰다.

금융정보가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금융교육을 247회(참여인원 863명, 대상 인원 29,630명) 실시하였으며, 「시장경영진흥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공동지원 협약도 체결하였다.

(2) 사회공헌 추진 기반 강화

공사는 2011년 6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요구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전 및 목표 등 사회공헌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SMART 사회공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SMART 사회공헌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등 사회공헌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공감대 확산을 통한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독서연수를 실시하고 사내 게시판에 사회공헌 일보(예보사랑 나누미)를 게시하였으며 경영진의 사회공헌 참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간의 활동을 서로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사회공헌 활동 내용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인식도 및 사회공헌 현장 관련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기관 으로부터 공사가 실천 중인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받고 신규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자문도 받았다.

(3)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공사는 2011년 중 임직원 기부금(1구좌 5,000원),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및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등으로 총 2억 1,850만원의 「예보사랑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활동 및 장학금으로 1억 8,858만원을 지출하였다. 대표적으로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가정이나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또는 봉사를 하는 「부서 1가정(시설) 돕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은평구 소재 사회복지단체인 「나눔의 둥지」를 방문 하여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지역사회 독거 노인 등 이웃을 위해 급식비 지원 및 배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공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구로구 소재 공립 정신지체 장애우 특수교육학교인 「서울 정진학교」 수업 보조 교사 활동과 「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협의 하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사랑의 집고치기」 활동 및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성북구 소재 불교계 최대 장애인생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장애아동 돕기 자원봉사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1년 8월 공사 인근의 「통인시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동 시장에서 직접 물품도 구입하여 공사가 후원하는 「나눔의 둥지」와 「승가원」 두 곳에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병행하였다.

한편 2011년에도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 10명(기존 수혜학생 4명 포함)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씩 ‘예보꿈나무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공사와 1사1촌 결연을 맺어온 충남 예산군 운곡리 마을을 찾아 봄가을 일손돕기 및 농촌마을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도농간 상호유대 강화 및 농촌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후원활동으로써 우편산 수해 복구 지원, 희망 2012 나눔 캠페인 후원,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후원, 「승가원」 장애가족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참여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Ⅱ-8〉 2011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명, 천원)

활 동 명	수혜대상/관련단체	현물	활 동		후원금
			횟수	참여인원	
1부서 1가정(시설) 돕기	어린이재단 등		210	649	56,213
특수학교 지원	서울정진학교		8	55	460
1사 1촌 운동	충남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		2	130	10,990
무료급식 지원	나눔의 등지		17	135	10,204
사랑의 집고치기	서울 해비타트		4	35	10,000
청계천 환경정화	청계광장에서 삼일교		9	72	807
사랑의 헌혈			7	8	-
사랑의 동전 모으기	월드비전		2	113	1,319
승가원 봉사활동	장애아동		12	70	5,596
개별/그룹 활동			75	81	-
예보꿈나무 장학금	저소득층 고등학생 10명		1	-	10,000
경제교육 등			206	219	-
전통시장 캠페인 등			247	863	-
불우이웃 돕기 등		현물	23	-	73,309
기 타	사회공헌활동 포상		-	-	3,500
	사회공헌활동비 등		-	-	6,180
합 계			823	2,430	188,578

4. 고객중심의 정보화 추진

가. 정보화 사업 추진

공사는 대내외 환경 분석 및 각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비전 및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2011~2013년도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융안정을 선도하는 고객중심의 선진 IT

서비스 제공'이라는 IT비전 달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II-4〉 정보화 중장기 전략 체계도(2011~2013)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 단계별로 이행 목표를 설정한 「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의 1단계에 해당되는 2011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과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보화 기반의 경영전략달성 지원」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검사 관련 자료 및 검사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검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검사업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리스크 상시감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금 동향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효율화를 위해 '기금관련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등 공사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둘째, 「고객 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실현」이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요구된 대내외 고객의 의견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인 고객 분석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공사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마무리 하고 예금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개산지급금을 신청하여 실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통합정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기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 ‘도서관리시스템 메타검색 기능 개선’ 사업 및 ‘대량 메일 발송 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도 완료하였다.

셋째,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정보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서버·네트워크 및 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신속한 장애 복구와 장애 원인을 규명하고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실시간 통합 로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보안USB 제도를 도입하여 중요 정보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점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 관리역량 강화’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완료하였다.

〈표 II-9〉 1단계(2011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정보화 전략목표	1단계(2011년도) 정보화 세부 이행과제	
I. 정보화 기반의 경영전략 달성 지원	• 공동검사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1. 9~2012. 2)
	• 예금동향시스템 기능개선	(2011. 9~2011.12)
	• 기금관련 시스템 기능개선	(2011. 4~2011. 6)
II. 고객중심의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실현	• 고객의 소리 관리시스템 구축	(2011.11~2012. 3)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공사 홈페이지 개편	(2011. 5~2011. 9)
	• 통합정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2011. 2~2011. 8)
	• 도서관리시스템 메타검색 기능개선	(2011.11~2011.12)
	•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기능개선	(2011. 3~2011. 4)
III.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정보보호 관리역량 강화	(2011. 4~2011. 6)
	• 통합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2011. 9~2012. 1)
	• 재해복구센터 확대	(2011. 5)
	• ISO/IEC20000인증 사후심사	(2011. 7)

나. IT서비스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 사후 심사 통과

공사는 2010년 12월에 연기금 운용 공공기관 중 최초로 대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체 IT 서비스를 대상으로 itSMF(IT서비스관리포럼) 및 UKAS(영국품질경영인증원)로부터 국제표준 품질규격인 ISO/IEC20000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11년 7월 영국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IT서비스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정기 사후 심사를 받았다.

이번 사후 심사 결과 공사는 전반적인 IT서비스 프로세스 관리체계가 보통 2~3년에 걸쳐 안정화되는 타 기관에 비해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안정화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공사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IT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향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제3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1. 예금보험제도 홍보

가. 주요 홍보 추진 실적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고령자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주요 홍보 대상으로 선정하고 TV광고를 제작하여 주요 도시에 소재한 지방 민영방송사(6개사)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공익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신문, 라디오, KTX, 버스,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등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광고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키고자 2011년 홍보 핵심 주제를 「예금을 지키다」로 설정하고 ‘내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예금 보호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사실도 집중 홍보하였다.

또한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를 비롯하여 노인 대상 신문과 시장상인 대상 신문 등 틈새 계층을 위한 매체에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도 관련 안내 문구를 넣은 홍보용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재래시장 등에서 배포하였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20대(특히 대학생)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즉, 「제1회 예금보험공사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전국 멀티플렉스 극장에 예금보험제도 공익 캠페인 홍보영상도 배급하여 방영하였고 대학생들의 구독율이 높은 주간지에도 이미지 광고를 게시하였다.

〈표Ⅲ-1〉 예금보험제도 홍보 메시지 및 이미지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홍 보 메시지	금융예보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행복보통제도입니다.	예금을 지키다.
홍 보 이미지			

한편, 공사는 2011년 11월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부산국제금융박람회’에 참가하여 공사 및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동 박람회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정보가 취약한 계층 중심으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일대일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 및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지역 예금자들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된 불안감을 덜어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밖에도 공사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생들의 경제지식 함양을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쉽게 풀어쓴 ‘알림장’을 제작·배포하여 왔으며, 2011년에는 예금 보호한도를 중점 부각시키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인근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3만 3천부를 배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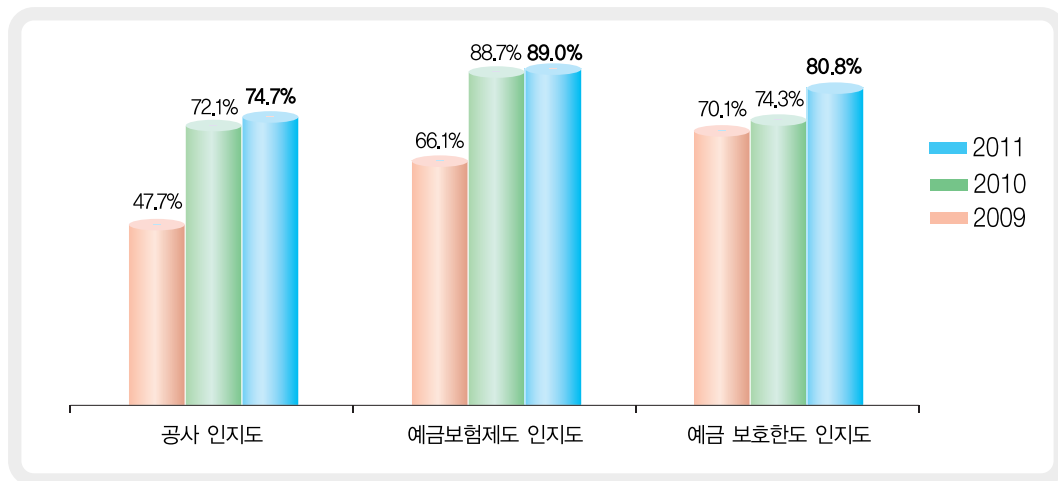


〈그림Ⅲ-1〉 알림장

나.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상승

공사는 매년 말 외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공사 및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행 및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 및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그간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사회공헌활동 및 공사 관련 언론보도의 증대 등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여론조사 결과 ‘공사 인지도’는 74.7%로 전년 대비 2.6%p 상승하였으며, ‘예금보험제도 인지도’는 전년대비 0.3%p 소폭 상승한 89.0%로 나왔다. ‘예금 보호한도’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전년대비 6.5%p 상승하여 80.8%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Ⅲ-2〉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등 조사 결과



2.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안내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 등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등 예금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을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공사는 보험관계 표시 이행여부에 대해 부보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부보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정보 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및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표시제도 이행여부 점검을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조사 효율성 제고 및 수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부보금융기관 본점과 영업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각각 구분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의 자율점검 방식에 의한 사전점검제를 도입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해당 업무 담당직원 1인당 120개의 부보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표Ⅲ-2〉 표시제도 현장점검 1인당 영업점 수

(단위 : 개, %)

구 분	2010년	2011년	증 가
1인당 점검 영업점수	103	120	16.4 ↑

또한 공사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예금보험제도 안내자료(‘알기 쉬운 예금보호제도’) 7만부를 제작하여 저축은행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 비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예금보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본인이 금융회사, 금융상품,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여 보호금액을 모의 산출해보는 ‘예금보호 금액 모의계산기’를 2011년 11월 공사 홈페이지에 구축하였다.

〈표Ⅲ-3〉 예금보호금액 모의계산기

공사 홈페이지



계산기 초기화면



3. 금융경제 교육 실시

가.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교육

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초등학생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SMART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사 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사로 초청하여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사는 2011년 중 전국 174개 초등학교 학생(21,7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대한노인회」의 협조를 받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2011년 중 노인대학 1개(50명)와 노인복지관 등 8개 기관(7,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 등을 교육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예금보험제도 관련 리플릿을 배부·설명하였으며, 상인대학을 통한 집합교육도 실시하였다. 2011년 중 공사는 임직원 863명이 참여하여 총 247회, 29,630명의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부보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안내교육

공사는 예금 보호대상 여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예금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영업점 등 금융현장에서 예금자(국민)를 직접 대면하는 부보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등 대국민 안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 총 23회에 걸쳐서 부보금융기관 임직원 1,520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2011년 12월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교육 및 금융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경기 지역 11개 쉼터*의 자립 청소년 100여명에게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하는 금융상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용 금융뮤지컬 공연 관람을 지원하였다.

*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결손가정 및 가출청소년 보호 봉사기관

또한 공사는 2011년 11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한 ‘시니어코리아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노인복지관 대표들에게 금융경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한국경제교육협회」에서 주관한 ‘경제교육진흥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예금보험제도 안내 Booth’를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금융경제 교육의 이론적 기반 확충

공사는 2011년 12월 「한국재정학회」와 ‘생활금융교육의 효과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금융경제 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 중에 있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행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책자에 공사의 금융경제 교육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2011년 중 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교육협의회」가 개발 중인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집필에 참여하여 예금보험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동 교재는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을 거친 뒤 2012년 중 일선 학교에서 인정교과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공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더불어 금융경제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표Ⅲ-4〉 2011년 금융경제 교육 추진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명)

교육 대상	실시 건수	대상 인원	교육 내용
초등학교	174	21,725	경제금융교육, 알림장 배포
노년층	9	7,320	예금보험제도 안내
전통시장	247	29,630	예금보험제도 안내 및 생활금융교육(보이스피싱 등)
금융회사 임직원 등	23	1,520	예금보험제도 안내
합 계	453	60,195	-

제2절 부실금융기관 금융소비자 보호

1. 가지급금 조기 지급 및 한도 상향

공사는 2011년 중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우선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 가지급금 지급 개시까지 2010년의 경우 13일이 소요되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8일로 단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다시 4일로 단축하여 금융거래 중단에 따른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크게 완화시켰다. 이처럼 가지급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사는 평시 가지급금 지급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기존에 금융감독원 단독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던 것을 가지급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공사도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2011년 중 부실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해 기존에 1,000만원이던 가지급금 지급 한도를 2011년 1월 1,500만원으로, 2011년 2월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공사는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 최소화와 영업정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하여뱅크런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였다.

2. 정리제도 개선을 통한 조속한 예금보험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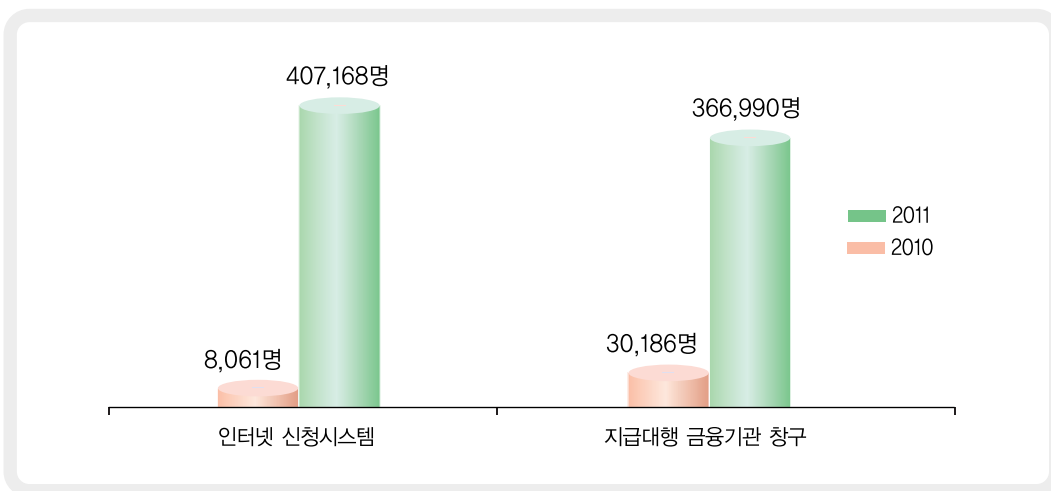
공사는 2011년 1월 영업 정지된 삼화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영정상화 기간 중 제3자 또는 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하였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시 자체 경영정상화 이행 기간도 단축하여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여 2개월의 이행기간을 30일로 단축하였다.

이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일(경영개선명령일)로부터 매각 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이 2개월(기존 평균 16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예금거래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공사는 「금융거래 중단 없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목표로 정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영업정지 이전에 제3자 매각 등 정리절차를 완료한 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고 익영업일에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정리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예금자 입장에서 금융거래 중단이 없도록 하는 정리절차

한편 공사는 2011년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지급대행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으로 인한 지연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지급 신청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동 서비스 이용률이 2010년 21%에서 2011년에는 53%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전화응대 인력 확충, 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안내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화면 간소화 등을 통해 동 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불편을 줄인 결과, 총 40만여명의 예금자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급금과 예금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림Ⅲ-3〉 가지급금 및 예금보험금 신청 현황



3. 배당금의 조기·극대화 지급 노력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향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 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개산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개산지급금을 통해 조기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절차 장기화로 인한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8월에는 개산지급금에 대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금자의 편의를 더욱 제고하였다.

한편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통산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남은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한 후 파산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 대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배당금 수령 통지가 불가능한 소재 불명 파산채권자의 배당금과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파산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 등 ‘미수령 배당금’에 대해 파산채권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파산채권자 총 97만 명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2011년 상반기 51개 파산재단 116,527명과 하반기 33개 파산재단 65,453명 등 총 181,980명에 대한 주소 보정작업을 실시한 후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새로 파악된 주소지에 배당금 수령 통지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수령 배당금 안내 시스템’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1년 339억원(20,555건)의 미수령 배당금을 파산채권자들에게 찾아 주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미수령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통하여 2005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파산채권자들에게 지급한 미수령 배당금은 총 2,256억원(401,389건)에 달한다.

〈표Ⅲ-5〉 미수령 배당금 지급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건)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 협	합 계
2011년	금액 (건수)	4 (510)	- (1)	0,001 (178)	303 (3,826)	32 (15,988)	0,002 (52)	339 (20,555)
2005년 8월~ 2011년 12월	금액 (건수)	105 (222)	4 (22,208)	1 (4,412)	641 (16,889)	1,503 (356,155)	2 (1,503)	2,256 (401,389)



차등보험료율제도

| 일시 Date | 2011년 12월 22일(목) 오후 3시 | 장소 Venue | 예금보험공사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시행방안 공청회

공사 19층 강당

| 주최 Organized by |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제4장

예금자보호제도 선진화

제1절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제2절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조사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제1절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

예금보험기금은 부보금융기관 업권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마다 엄격하게 구분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업권에서 해당 계정에 적립된 기금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하여 적시에 부실을 정리할 수 없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업권 공동으로 예금보험료의 일정 부분 등을 “공동계정”으로 적립하였다가 부실이 발생한 업권에 대한 구조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10년 11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2011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정의 명칭, 사용 목적 등이 수정되어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수정안은 계정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하고, 그 설치 목적을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특별계정의 수입을 정부의 출연금, 각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금보험료,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 및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보험사고와 관련된 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Ⅳ-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련 예금자보호법 주요 내용

항 목	내 용
특별계정의 명칭 및 목적 (제24조의4 제1항)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하고, 설치 목적을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지원으로 한정
활용 범위 (부칙 제4조)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정리
특별계정의 수입 재원 (제24조의4 제2항)	정부의 출연금, 예금보험료 수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계정간 차입금, 외부 차입금, 회수 자금, 기금운용수익 등
예금보험료 수입 (제24조의 4 제2항 제5호)	각 부보금용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금보험료 (단,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간 예금보험료 중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예금보험료)
자산 및 부채의 이전 (제24조의4 제3항)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저축은행계정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이전 가능
계정간 차입금 이자의 감면 등 (제24조의4 제5항)	특별계정의 계정간 차입금에 대하여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 감면 또는 납부 유예 가능
운영 시한 (부칙 제2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

2. 저축은행 예금보험료를 인상

저축은행 업권의 계속되는 부실로 인하여 2010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의 누적 적자가 2.1조원에 이르렀으며, 은행 등 타 업권의 부담을 전제로 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2011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의 자기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에 대한 예금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저축은행 예금보험료를 0.05%p 올림으로써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0.35%에서 0.40%로 인상되었다.

3. 차등보험료율제도 등 시행 준비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건전 경영 유도와 예금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차등 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7년 5월 동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도입을 통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계, 부보금융기관 및 언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정책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고 부보금융기관 및 각 업권별 금융협회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등보험료율제도 관련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2009년 2월에 공포되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차등보험료율제도 실시 근거 조항이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행 시기는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동법 시행령에 의거 2014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부보금융기관이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과 부보금융기관별로 다르게 정하여진 차등 보험료율을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보금융기관과 그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2011년 중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기존 차등평가 모형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거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차등평가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금융위기로 부각된 유동성 리스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표를 평가모형에 반영하였으며, 종합금융회사 및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 대한 평가모형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외부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차등평가 모형 개선 및 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사 추진안을 2011년 6월에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공사 직원 및 유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준비 외부 합동 T/F’를 2011년 7월에 구성·운영하였으며, 2011년 12월 차등평가 모형 개선 및 시행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9월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소홀과 비리 및 유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2011년 9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혁신방안에는 공사가 사전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의무적으로 공동검사(매년검사)에 참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사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갖게 되며, 공사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1년 12월말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정부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다.



제2절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조사연구

1.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망 체계 조사연구

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관련 해외사례, 이론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을 통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모범 기준(Best Practice)과 제도 발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Ⅳ-2〉 2011년 주요 조사연구

주 제	제 목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예금보험제도 변화	• 주요국 금융안정망 개편 주요내용 및 시사점 • 美 FDIC 예금보험정책 변경 주요내용 • 금융개혁안을 적용한 비부보금융기관 정리 •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이 금융 및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예금보험제도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 FDIC, 예금보험제도 내용에 대한 금융기관 직원 교육 의무화 추진 • FDIC의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고 노력 • 금융소비자의 FDIC 온라인 정보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금융안정망 체계 조사연구	• 북미·중남미 국가 금융안정망 체계 조사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 유럽 국가 금융안정망 체계 조사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금융안정망 체계 조사 -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특히 2011년 중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와 유럽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 환경 속에서 공사는 주요국의 금융규제 개혁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관련 법규 및 운영에 대한 현황과 변천,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와 그 시사점에 대해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각국의 금융안정망 체계(중앙은행, 감독 기구, 예금보험기구 등) 및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체계 개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 연구 결과물 공유 노력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정연구(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에 수록·발간하여 정책당국, 유관기관, 학계, 언론 등에 제공하여왔다. 공사는 이러한 발간 사업 및 제공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Ⅳ-3〉 2011년 주요 발간물

제 목	주요 게재 논문
금융안정연구(12권 1, 2호) 	•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분석 • 신흥시장 시스템 위기의 원인과 측정방안 • 바젤Ⅲ 자본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 • 대형·복합금융회사의 정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 • 시스템 위기와 거시건전성 규제
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 저축은행 예금 유출입의 극단적 변화 예측 기법에 관한 연구 •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 예금보험료 부과 베이스 개선 방안 •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회수기능 강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

제3절 국제교류 및 협력

1.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및 내실화

공사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각국 예금보험기구 등과 MOU를 갱신·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안정망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이 크게 강조됨에 따라,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국제협의체인 IADI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IADI는 예금보험 관련 글로벌 표준인 “예금보험핵심준칙 및 평가기준(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Methodology)*”을 제정하고, 2011년 2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주요 글로벌 금융규범에 동 핵심준칙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IADI는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구축을 위한 국가별 이행 권고사항으로서, 예금보험제도의 목표, 예금보험기구의 책무와 권한 및 지배구조, 다른 금융안정망 참여자들과의 관계, 회원자격과 보호한도, 기금조성, 대국민 홍보, 예금보험기구 및 그 직원에 대한 법적보호, 부실 정리, 예금보험금 지급, 자산회수 등 총 18개항의 준칙(Principle)과 준칙별 평가기준(Methodology)으로 구성됨.

공사는 IADI 창립회원이자 집행위원으로서 IADI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주요 안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그간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인정받아 2010년부터 IADI 내 “시스템 위기대응 조사연구 소위원회”의장국을 맡아 관련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50여개 예금보험기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현황과 정책적 함의를 정리한 Discussion Paper를 IADI 연차총회에서 발표하였다. 향후 동 조사결과 보고서는 IADI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통합 예금보험기구로서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살려,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또는 도입을 준비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2011년 4월 “통합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워크숍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미국 예금보험기구 부서장급 간부 등 30여명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5개 세션에 걸쳐 국가별 통합 예금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소개, 공사의 제도 운영 경험 공유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동 워크숍을 계기로 공사는 통합예금보험제도에 대한 IADI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IADI 산하 연구·지침상임위원회(Research and Guidance Committee; RGC) 내에 “통합 예금보험제도 조사연구 소위원회”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2011년 10월 IADI 연차총회에서 공사를 의장국으로 한 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11년 말 현재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5개국의 예금보험제도 관련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개별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대만 예금보험공사와는 2011년 3월에 만료되는 기존의 정보 및 인력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하였으며,

몽골 재무부 및 중앙은행(2011.6),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2011.11)와도 MOU를 신규로 체결하는 등 2011년 말 현재 총 10개국 12개 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여 각국 금융안정망 기구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각국 MOU 체결 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2주~3주 내외의 단기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11년 5월에는 일본 예금보험공사(DICJ)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았으며, 9월에는 터키 예금보험기구(SDIF)에는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터키 예금보험기구의 구성과 예금보험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2011년 중 영문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분기별로 영문 뉴스레터를 다른 나라 예금보험기구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 발송하여,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힘을 기울였다.

2.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Global-KDIC KSP) 추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면서 개발도상국 등 해외 국가들로부터 공사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등을 배우려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10년 12월, 공사 내부에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 추진단(Global-KDIC KSP*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금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거나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 대해 역량강화 연수와 정책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Global-KDIC KSP)”을 활발히 진행하여왔다.

*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1년 중 공사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국가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예금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을 전달하는 국제 워크숍을 4월(통합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실무 워크숍)과 11월(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워크숍)에 각각 개최하였다. 특히, 11월 국제 워크숍에서는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준비 중인 부탄, 몽골, 네팔 및 탄자니아 등의 재무부, 중앙은행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하여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습득하고 향후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동 워크숍을 계기로

공사는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와 정보 및 인력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공사는 정부의 “개발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에 Global-KDIC KSP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2010년 정부의 KSP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몽골의 예금보험제도 도입 지원은 공사의 Global-KDIC KSP 사업과 연계된 것이며, 2011년 몽골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를 바탕으로 한 예금보험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공사는 몽골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정보 및 인력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몽골 중앙은행 금융분석기구(2011.2)와 몽골 국회의원 등 입법조사단(2011.3, 2011.12)에게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전수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우수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한국형 원조모델로 2010년부터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범정부사업으로 추진(기획재정부 총괄)

아울러 2011년 6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탄자니아 예금보험기구 설립을 지원하는 “탄자니아 KSP”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 단독으로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설립을 위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2011년 8월 공사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현지 고위정책결정자들과 면담 등 예금보험기구 설립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9월 탄자니아 경제상황, 예금보험기구 설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장애요인 등 세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작성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탄자니아 정책실무자들을 공사로 초청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탄자니아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예금보험제도 선진화 실무추진단(Working Group)” 구성을 지원하였으며,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과 정책제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공사는 2011년 2월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중국·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자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컨설턴트로 선정된 공사 직원이 중국 인민은행과 몽골 중앙은행 등을 각각 2차례 방문하여 정책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2011년 10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제정을 앞둔 베트남 국회 및 예금보험기구의 초청으로 공사 임직원 3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한국 예금보험제도 운영 경험 공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소개하고 베트남 예금보험법 초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표Ⅳ-4〉 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전파 실적

국 가	대상기관	일 자	주요 내용
베트남	예금보험기구, 국회	10월	• “한국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세미나 참석
몽 골	정부, 국회, 중앙은행	2월	• 몽골 중앙은행 금융분석기구 내방 •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정책자문 최종보고회 참석
		3월	• 몽골 국회의원 등 입법조사단 내방 • ADB의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자문” 참여
		6월	• 몽골 재무부 및 중앙은행과 3자간 MOU 체결 • ADB의 “몽골 예금보험제도 도입 자문” 참여
		11월	• “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워크숍” 참석
		12월	• 몽골 국회의원 등 입법조사단 내방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기구	4월	• “통합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실무 워크숍” 참석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기구	4월	• “통합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실무 워크숍” 참석
네 팔	예금보험기구	9월	• 현지 세무 실태조사 및 네팔 예금신용보증공사 사장 면담 실시
		11월	• “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워크숍” 참석 • 네팔 예금보험기구와 MOU 체결
부 탄	중앙은행	9월	• 현지 세무 실태조사 및 부탄 중앙은행 총재 면담 실시
		11월	• “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워크숍” 참석
탄자니아	정부, 중앙은행	6월	• 독립 예금보험기구 설립 지원 정책자문 착수
		8월	• 현지 수요조사 및 탄자니아 중앙은행 총재 면담 실시
		9월, 10월	• 현지 세무 실태조사 실시
		11월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실시 • “2011년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국제 워크숍” 참석





2011년도 예금보

2011년 12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법공사 공동검사 워크숍

2월 21일(수)



제5장 리스크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제1절 조사 및 공동검사

1. 리스크 감시 기반 및 역량 강화

가.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업무 법적 근거 확보 노력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상시 감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업무의 범위에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며, 2010년 11월 관련 법률 개정안(정부안)이 발의되어 2011년 12월말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공사의 보험사고 위험 관리 기능이 활성화되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리스크 감시 모형 개선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평가하기 위하여, 리스크 감시 모형을 통해 부보금융기관의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재무상태 등을 예측하고 있으며 동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 부보금융기관을 금융권역별 감시 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상시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 감시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여 왔다. 2011년에는 은행업·금융투자업·손보업권 등에 대한 업무 보고서 개편에 따른 변경된 수시정보를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에 따라 기존 지표 중 변경사항을 점검·수정하여 리스크 감시 모형의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도 추진하였다.

다. 리스크 감시 역량 강화

공사는 리스크 감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감시 모형 등을 활용한 분석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에 “리스크상시감시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리스크상시감시교실”에 대한 임직원 설문 조사 및 리스크 감시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금융현장의 시의성 있는 내용 중심의 주제를 발굴·선정하였으며, 강의 내용도 이론과 실무가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2011년에도 공동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검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부보금융기관 경영정보시스템(FIAS) 및 리스크 감시 모형의 개선에 따른 공사 내부 사용자 교육 등을 수시 개최하였다.

또한 리스크 감시 관련 부서에서 생산한 분석보고서 중 반기별로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여 사내 포탈에 게시함으로써 분석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상반기에 2편, 하반기에 3편의 우수 보고서를 선정하여 사내 포탈에 게시하였다.

2. 상시 감시 기능 활성화

공사는 2006년부터 리스크 감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상시 감시 업무수행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부보금융기관 보험사고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 내부에 “상시감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금융권역별 경영위험,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책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위험을 적절히 감시하기 위하여 부보금융기관별 또는 업권별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데스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리스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리스크 요인에 대한 지속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리스크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집·생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분석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리스크 감염 경로 등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 중 시사성이 높은 상시 감시 결과를 요약·정리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KDIC 금융 현장정보”)를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학계, 언론계, 부보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개선 하였다. 우선, 경영진 및 실무진 면담을 적극 실시하여 다양한 현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였고 경영상태 및 리스크 요인 분석 등을 통한 잠재부실을 파악하여 사전 위험감축을 유도하였다. 또한,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뱅크런(Bank-Run)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불법대출 관련 언론보도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3. 조사 및 공동검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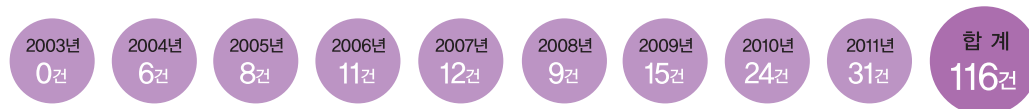
공사는 2004년 1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 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대응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9월 공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융정보 공유 범위 등을 기존 MOU보다 확대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새로이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정보 22건을 한국은행에 처음으로 제공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도 2010년 대비 4건이 추가된 29건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2011년 공사가 제공받은 금융정보 자료도 더욱 확대되어 한국은행으로부터 가계대출 속보 등 4건의 정보가 추가되어 48건의 정기 보고서를 제공받았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9건이 추가 되어 1,279건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제공받고 있다.

한편 공사는 부보금융기관 검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수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9월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2007년 7월 동 양해각서를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가 필요시 수시로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공사는 양해각서를 통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감독원과 85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공사는 2011년에 리스크 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낮거나 특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보금융기관을 공동검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해당기관이 리스크 요인을 개선하도록 경영진에게 촉구하였다. 2011년에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위험 증가로 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으며, 연간 공동검사 실적 또한 2010년 24건에서 2011년 31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V-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적



4. 시장친화적 리스크 감시

공사는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 분석과 이를 통한 시장친화적인 감시 등을 위해 “금융리스크리뷰誌”(계간지)를 발간하였다. “금융리스크리뷰誌”는 공사가 생산한 리스크 분석 정보 및 학계와 금융시장 전문가가 기고한 리스크 관리 기법 등을 수록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국회, 학계 및 부보금융기관 등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공사는 2011년 11월 “KDIC 금융현장정보”에 대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의 유용성 여부,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표 V-1〉 2011년 금융리스크리뷰誌 주요 내용

비 고	주 요 내 용
2011년 봄 호	- 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강세 배경과 향후 전망 - 콜차입 규제가 증권사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1년 여름호	- 장기손해보험 성장에 따른 RBC비율 변동 및 시사점 -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011년 가을호	- 고정금리 대출확대가 금리스왑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업의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2011년 겨울호	-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고찰과 모형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민감도 연구 - 국내 자산운용사의 리스크관리 현황과 과제

아울러 공사는 2011년에도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상시 감시를 통하여 생산된 부보금융기관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정보를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보금융기관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경영컨설팅을 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의 자율적인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특히,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별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집중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중 공사는 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체제 구축 및 내부직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한 결과 컨설팅 만족도가 2010년 대비 상승하였다.

또한, 공사는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2011년에 한층 강화하였다. 우선 공사 홈페이지에서 저축은행의 경영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자산규모별로 통계 자료를 구분하여 게시하였다. 아울러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 일반 예금자들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건전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공사는 앞으로도 검사·조사업무와 더불어 컨설팅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감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2절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관리

1. MOU 체결 및 점검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2002년 4월 이후 제주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매각 또는 합병시킴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기관과의 MOU를 해지하였으며, 2011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용사업부문 및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의 2010년도 4/4분기부터 2011년도 3/4분기까지의 MOU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기관주의 3건, 기관개선 2건, 임원주의 1건, 총 6건의 조치를 부과하였다.

재무부문과 관련하여, 우리금융지주는 기업구조조정 실시 및 부동산 PF여신 부실화 등으로 인해 2010년도 4/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하였다. 우리은행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및 고위험 업종 여신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2010년도 4/4분기 MOU 재무목표 중 ROA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공사는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수익력 및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제고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비재무부문과 관련하여, 2010년도 4/4분기 MOU 점검결과 우리은행이 MOU 재무부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2% 임금인상안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사는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임원주의 조치를 함께 부과하고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이 연간 재무목표 달성에 연계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경남은행은 2008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미개선에 따른 MOU 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에 공사는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부과하고 MOU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였다.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지급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하여 과도한 희망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공사는 수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해 기관개선 조치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1년 1/4분기에는 경남은행의 특정차주에 대한 여신 편중 및 해당 여신에 대한 관리 미철저에 대하여 기관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공사는 향후에도 MOU 목표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경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미달성 시 귀책사유 분석 등을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는 등 보다 철저한 MOU 관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표 V-2〉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11년 12월말 현재)

금융기관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우리금융지주	2001. 7. 2	2003. 1.22		
우리은행	1999. 1.22 ¹⁾	2005. 3.23	2004. 9.22	
(舊한빛은행)	(2000.12.30)	2007. 3.28	2007.12.26	-
광주은행	2000.12.30	2009. 3.30	2010. 3.23	
경남은행	2000.12.30	2011. 3.30		
수협 신용사업부문	2001. 4.25	2005. 3.23 2007. 3.28 2009. 3.30 2011. 3.30	2003. 2.12 2003. 7. 9 2005.12.21 2007.12.26 2010. 3.23	-
서울보증보험	2000. 4.12 ¹⁾ (2001. 6. 9)	2005. 6.22 2007. 7.18 2009. 6.10 2011. 6.18	2002. 7.10 2006. 6.21 2007.12.26	-
제주은행	2000.12.30	-	-	2002. 4.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30	-	2001. 6.29	2002.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11.12 ¹⁾ (2002. 1.31)	-	-	2003. 8.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5.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¹⁾ (2002. 2.20)	-	-	2005. 3.31 (舊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12 ¹⁾ (2001. 9. 5)	-	-	2002.12.12 (한화컨소시움 앞 매각)
우리카드 (舊평화은행)	2000. 6. 7 ¹⁾ (2000.12.30)	2003. 6. 4	2002. 3.25	2004. 3.31 (우리은행 합병)
우리증금	2000.12. 9	-	2001. 6.29	2003. 8. 1 (우리은행 합병)

주 : 1) 해당 기관, 공사,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2. MOU 관리의 효율성 제고

가. MOU 체결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제도 개선

MOU 체결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른 MOU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는 금융기관 및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MOU 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연간 MOU 목표 부여를 과거 실적을 반영하여 부여하고, 분기별 목표는 MOU 체결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경영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또한 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 수준을 산출하고, 재무목표의 달성 여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목표의 합리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MOU 약정서 상 재무목표를 미달한 경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여 왔으나, 2011년 5월 MOU 약정서 개정을 통해 연간목표 미달 시 해당연도에 한해서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금지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MOU 체결 금융기관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

2011년 중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과 CEO 간담회 14회, 임원진 간담회 37회, 실무자 간담회 54회 등 총 105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MOU 업무 관련 실무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금융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도 개선 관련 건의사항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MOU 체결 금융기관 경영진 등과의 경영협의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 상황 및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하고 있다.

다. MOU 체결 금융기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 지원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 사외이사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와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기관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1/4분기 MOU 이행실적 점검부터 점검결과 및 경영상 유의사항 등을 공사 사장 명의의 협조 편지와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중 공사는 MOU 체결 금융기관의 이행부진 사항 등에 대한 상시감시 분석자료 및 구체적이고 적시성 있는 현안 정보 등 총 85건을 해당 금융기관 사외이사에게 제공하는 등 MOU 체결 금융기관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경영개선명령 공고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1월 14일자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및 제5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았음을 공고합니다.

1. 영업의 정지

-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단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기일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
- 영업정지기간 : 2011. 1. 14 ~ 7. 13 (6개월간)

2.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 관리인 : 금융감독원 이완식
예금보험공사 전상오

3. 자본금 증액

-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을 5%이상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

2011년 1월 14일

(주)삼화상호저축은행 관리인
(☎ 1588-5191)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2011.1.14)에 의하여 2011년 1월 14일부터 예금 등 채무의 지급 등 일체의 영업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금지급과 관련하여

-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영업이 재개되어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금계약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보험금 지급시 원리금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 (주)삼화상호저축은행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예·적금에 대하여는 그 원리금에서 (주)삼화상호저축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예·적금의 이자는 약정이율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삼화상호저축은행 관리인
(☎ 1588-5191)

제6장

부실금융기관 정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매각 및 계약이전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수자산 관리

제1절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1.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2011년 중 금융위원회는 부산 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 정지 조치를 부과하였다. 이에 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예금자의 동요를 방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명*의 관리인과 402명의 감독관을 부실저축은행에 투입하여 경영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 부산저축은행은 경영관리 기간 중 관리인 교체(2011.10.5)

공사는 2011년 말 현재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제3자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인수된 삼화저축은행과 현대증권이 경영권을 인수하여 자체정상화가 이루어진 대영저축은행을 제외한 14개 부실저축은행을 경영관리하고 있다.

* 부실금융기관 영업정지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의 우량 자산 및 부채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하여 계약 이전하는 방식이며 계약이전 후 부실금융기관에 남은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공사 주도로 파산 절차를 진행.



〈표Ⅵ-1〉 2011년 부실금융기관 경영관리 현황

(단위 : 억원, 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자산규모 ¹⁾	지점수	영업정지일	계약이전일	정리방식 (인수 금융기관)	파산 선고일 (자체 정상화)
삼 화	13,903	1	2011. 1.14	2011. 3.16	제3자 계약이전 (우리금융지주회사)	2011. 6.24
부 산	24,658	3	2011. 2.17	2011.11.23	가교 ²⁾ 계약이전 (예술저축은행)	-
대 전	14,061	12	2011. 2.17	2011. 9. 5	가교 ²⁾ 계약이전 (예나래저축은행)	-
부 산 2	24,618	3	2011. 2.19	2011. 8.26	제3자 계약이전 (대신증권)	-
중앙부산	7,527	-	2011. 2.19	2011. 8.26	제3자 계약이전 (대신증권)	-
전 주	4,931	4	2011. 2.19	2011. 9. 5	가교 ²⁾ 계약이전 (예쓰저축은행)	-
보 해	5,529	1	2011. 2.19	2011. 9. 5	가교 ²⁾ 계약이전 (예쓰저축은행)	-
도 민	3,437	6	2011. 2.23	2011. 8.26	제3자 계약이전 (대신증권)	-
경 은	3,422	3	2011. 8. 5	2011.10.19	가교 ²⁾ 계약이전 (예술저축은행)	-
프 라 임	12,566	1	2011. 9.18	-	매각 추진 중	-
파 랑 새	4,182	-	2011. 9.18	-	매각 추진 중	-
토 마 토	38,835	6	2011. 9.18	-	매각 추진 중	-
제 일	33,137	5	2011. 9.18	-	매각 추진 중	-
제 일 2	10,610	3	2011. 9.18	-	매각 추진 중	-
에 이 스	9,918	1	2011. 9.18	-	매각 추진 중	-
대 영	6,188	2	2011. 9.18	-	자체 정상화 ³⁾ (현대증권이 경영권 인수)	(2011.11.21)
합 계 (16개사)	217,522	51	-	-	-	-

주 : 1) 삼화 : 2010년 6월말,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 2010년 12월말, 경은 : 2011년 3월말, 프라임·대영·제일·제일2·에이스·토마토·파랑새 : 2011년 6월말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기준

2) 가교금융기관

3) 현대증권이 경영권을 인수(M&A)함에 따라 2011.11.21 적기시정조치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음

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체계적 경영관리

2011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구조조정은 경영관리 업무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즉,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규모 경영관리 인력의 투입 및 운용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 업무 지원과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경영관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관리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와 정리방식 결정 및 자금지원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저축은행정상화부”를 2011년 1월 즉시 신설하여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경영관리 인력의 투입 및 운용을 위해 미리 “자산규모별 · 시나리오별 · 단계별 인력 운용계획(2011.3, 2011.9)”을 수립 하였으며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영관리 인력 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영업 정지된 16개 부실저축은행에 기존 직원 193명과 인력 운용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한 기간제 검사역 226명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었다. 특히 기간제 검사역들은 공사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금융전문가들로서 여 · 수신 등의 업무에 숙련 되어 있어 공사가 경영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표Ⅵ-2〉 20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인력 투입 현황

(2011.12월말 현재, 단위 : 명)

영업정지 저축은행	공사 기존 인력	신규 채용 기간제 검사역	합 계
삼 화	16	-	16
부 산	20	24	44
대 전	42	30	72
부 산 2	14	27	41
중앙부산	5	6	11
전 주	15	16	31
보 해	11	10	21
도 민	9	25	34
경 은	6	7	13
프 라 임	7	13	20
파 랑 새	8	2	10
토 마 토	10	22	32
제 일	8	20	28
제 일 2	7	10	17
에 이 스	9	7	16
대 영	6	7	13
합 계 (16개사)	193	226	419

한편 2011년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구조조정은 부실저축은행의 일부 부도덕한 임직원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법대출 등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16개 부실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비롯한 저축은행업권의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예금보험제도 관련 민원이 폭증하였다.

이에 공사는 예금자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고객만족센터”를 저축은행 관련 업무 담당 이사를 반장으로 하는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각 부실저축은행에 투입된 관리인 및 감독관 이외에 예금보험제도 설명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내방 예금자에 대한 설명회를 영업정지 이후 2주간 매일 최소 10회 이상 수시로 개최**하여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79명. 영업정지 초기에 폭증하는 민원을 응대하고 예금자 안내를 전담하는 인력

** 과거 영업정지 시에는 별도의 설명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관리인 주관으로 매일 2~3회의 설명회를 영업정지 초기에 개최

또한,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지급금을 영업정지일 이후 4영업일 만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예금자가 과거보다 한층 신속한 절차에 의해 편리한 장소에서 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존 농협중앙회 이외에 가지급금 지급대행 기관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인근 대형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가지급금 수령 이후에도 추가로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사는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인근 은행에서 본인의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특히 공사는 2011년 하반기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구조조정에 앞서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담보대출 조건 등이 예금자에게 보다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공사는 예금담보대출 금리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별 약정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대출 취급은행과 금리 등의 대출조건을 사전에 협의·확정하였으며, 아울러 영업정지 저축은행 인근 은행영업점에 “대출 전담창구”를 개설하도록 하여 예금자들이 개별 대출상담 없이 간편하게 예금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Ⅵ-3〉 예금담보대출 알선 개선사항

구 분	개선 전 (2011년 상반기 8개사)	개선 후 (2011년 하반기 8개사)
대출금리	대출은행 결정금리 (예금자별 단일금리)	예금자별 약정 예금금리와 유사한 수준 (최저금리 및 최고금리 별도)
대출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상이 (통상 2개 영업점 내외)	농협(50개), 우리은행(32개), 국민은행(29개), 신한은행(29개), 하나은행(29개), 경남은행(2개)
개시시점	영업정지 저축은행별 상이	가지급금 지급과 동시에 취급 (영업정지일 이후 4영업일부터 취급)

〈표Ⅵ-4〉 예금담보대출 알선 실적

(2011.12월말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출 건수	대출금	예금담보대출 취급은행
삼 화	31	607	전북·농협
부 산	510	9,512	부산·농협·하나
대 전	79	1,421	하나·농협
부 산 2	139	2,416	부산·농협·기업
전 주	26	435	전북·농협·예나래저축
보 해	181	3,803	농협·광주·하나·기업
도 민	4	57	농협
경 은	23	475	농협, 경남은행
프 라 임	144	2,616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
대 영	38	761	농협·국민·우리·신한
제 일	328	6,457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
제 일 2	114	2,287	농협·국민·우리·신한
토 마 토	614	11,614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
에 이 스	208	3,684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
파 랑 새	47	746	농협·국민·우리
합 계 (15개사 ¹⁾)	2,486	46,891	-

주 : 1)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예금담보대출 알선 미시행

이와 같이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일부(“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2011년 5월 동 저축은행을 불법 점거하여 재산 실사 등의 정리절차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런 사유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리 작업이 지연되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의 피해가 늘어 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두 예금자 집단 간에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고조되었다. 이에 공사는 약 5개월간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와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을 병행하여 2011년 9월에 불법 점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

* 총 7회(사장 2회, 담당이사 4회, 부서장 1회)에 걸쳐 점거 중인 예금자 방문

이처럼 공사 임직원과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 관리인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막중한 사명감 하에 영업정지 사태에 유기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경영 관리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2절 부실금융기관 매각 및 계약이전

1. 부실금융기관 매각 및 계약이전 현황

가. 제3자 계약이전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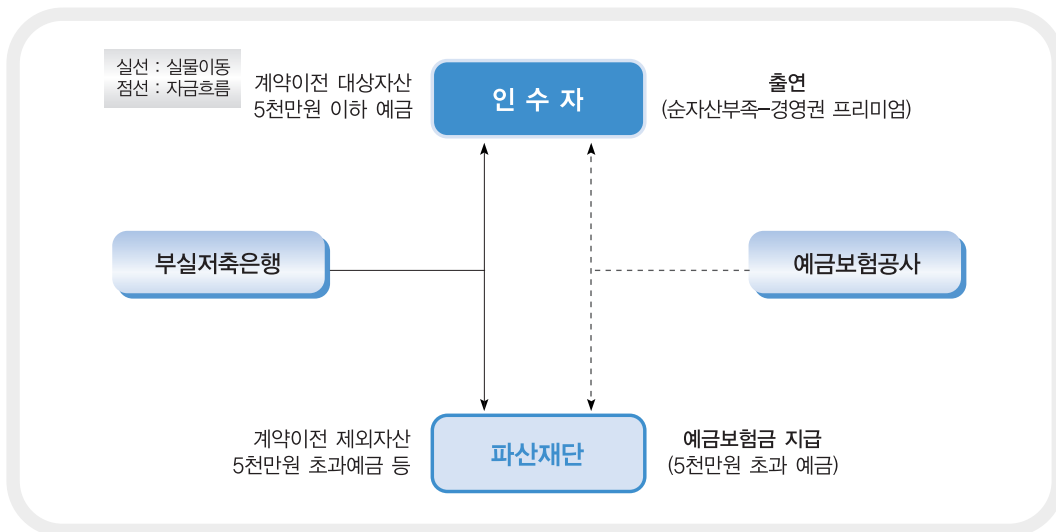
2011년 1월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BIS 비율 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유상증자 등을 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 후 경쟁 입찰에서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부채(예금 등)의 범위 및 순자산부족액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금자보호법상 자금 지원 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인수자로 선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공사는 2011년 3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신규 설립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하였다.

2011년 2월 중순 지속적인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되었다. 이후 동 저축은행들은 자산·부채 실사 결과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져 2011년 4월말 금융위원회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공사는 부실금융기관의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부실 흡수여력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였으나 매각 성사를 위하여 인수 희망자의 업종은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통한

매각 가치 제고 및 매각 가능성 향상을 통한 예금자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동 부실저축은행 3개사를 Package로 구성하여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상 자금 지원 시 지켜야 할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대신증권을 인수자로 선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 8월 대신증권이 신규 설립한 대신저축은행에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3개사의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하였다.

한편 2011년 9월 영업 정지된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은 BS금융지주회사를, 토마토저축은행은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제일저축은행은 KB금융지주회사를, 제일2·에이스저축은행은 하나금융지주회사를 각각 계약이전 대상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1년 말 현재 계약 이전에 관한 세부 협상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VI-1〉 제3자 계약이전 정리방식 체계도



나. 가교금융기관을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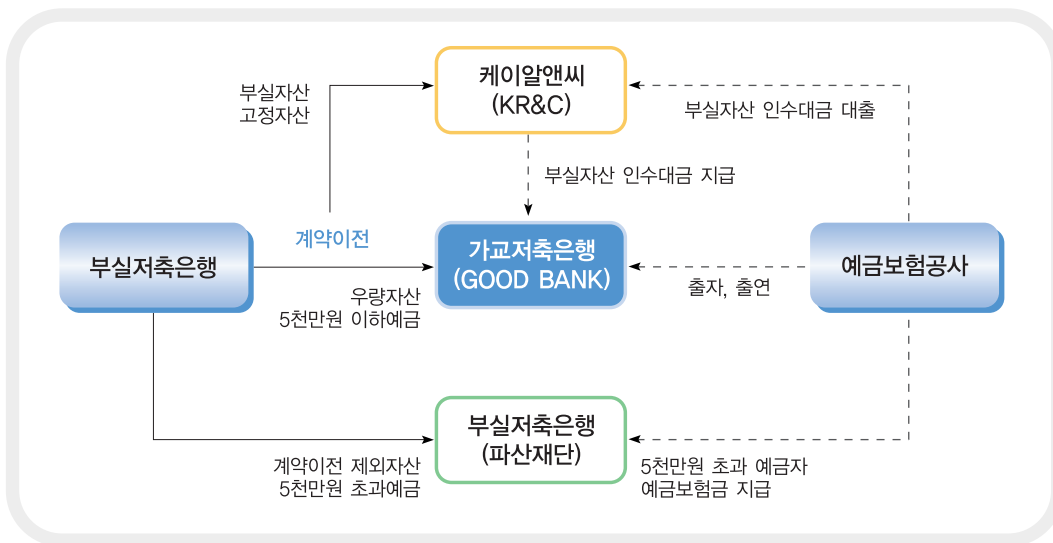
공사는 2011년 2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 대전·전주·보해·부산저축은행을 Package로 구성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유찰되었다. 이에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을 개별 매각으로도 진행하였으나, 이 또한 유찰되어 대전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는 기존의 가교 금융기관인 예나래저축은행(공사 지분 100%)으로, 전주·보해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는 기존의 가교금융기관인 예쓰저축은행(공사 지분 100%)으로 2011년 9월에 각각 계약이전 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된 경은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는 예금자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신규로 설립한 가교금융기관인 예술저축은행(공사 지분 100%)으로 2011년 10월에 계약이전 하였다. 한편 일괄매각(Package)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저축은행은 재산 실사 지연으로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인수 희망자가 없어 2011년 11월에 자산·부채 일부를 예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였다.

공사는 향후 M&A 시장상황, 저축은행업권 구조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가교금융기관인 예나래·예쓰·예술저축은행이 보다 건실한 서민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우량한 금융자본 등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계획이다.

〈그림Ⅵ-2〉 가교금융기관을 통한 정리방식 체계도



〈표Ⅵ-5〉 2011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정리방식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	인수금융기관	계약이전일
제3자 계약이전	삼화저축은행	우리금융지주회사	2011. 3.16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대신증권	2011. 8.26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	매각 추진 중	-
	토마토저축은행	매각 추진 중	-
	제일저축은행	매각 추진 중	-
	제일2·에이스저축은행	매각 추진 중	-
가교금융기관 계약이전	전주·보해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2011. 9. 5
	대전저축은행	예나래저축은행	2011. 9. 5
	부산저축은행	예술저축은행	2011.11.23
	경은저축은행	예술저축은행	2011.10.19

2.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선진화

2005년 2월 이전에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 방식을 결정하는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이루어졌고, 공사는 동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투입하여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경우 자금지원 주체(공사)와 계약이전 절차 진행의 주체(금융감독원)가 서로 달라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기간이 통상 2~3개월 이상 지연되어 예금자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 가치 등도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계약이전이 무산될 경우 청·파산 처리가 불가피하여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정리방식이 타 업권에 비해 다소 경직된 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2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즉시 해당 부실저축은행의 처리를 공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제도를 개선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부실저축은행의 실정에 맞는 정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5년 이후 공사는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제3자 계약이전이나 가교금융기관 계약이전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여 예금자 불편과 정리비용을 최소화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 시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에 부여하는 자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동안에는 공사가 계약이전 절차를 병행할 수 없어 정리기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공사는 대주주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시 자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자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을 2개월에서 30~45일로 단축하였다. 또한 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중에도 제3자 또는 공사 소유 가교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방식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과거 평균 16개월 소요되던 부실저축은행 정리 소요기간을 평균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예금자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였다.

〈표Ⅵ-6〉 부실저축은행 정리기간 비교

연 도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정리기간
2004~2010	한마음 등 10개 저축은행 ¹⁾	가교금융기관 / 제3자 계약이전	489일
2011	부산2저축은행	제3자 계약이전 (패키지 방식)	119일
	중앙부산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제3자 계약이전 (개별매각 방식)	61일

주 : 1) 2004년 이후 영업 정지되어 2010년까지 제3자 계약이전이나 가교금융기관 지분 매각이 완료된 저축은행

3. 부실금융기관의 신속,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노력

가. 부실금융기관 정리계획 사전 수립

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 심화 등으로 영업정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부실저축은행의 보유 자산 특성 및 정리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정리 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 2011년 중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 재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공사는 2011년 상반기 부산 등 7개 저축은행 정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일(2011.4.29) 이전에 제3자 매각 입찰 참가 자격, 입찰 구조, 일괄매각(Package) 방식 도입 및 구성, 계열 저축은행 보유 SPC 자산의 처리방안 등 정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다. 또한 공사는 2011년 하반기에도 부실저축은행 정리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제3자 매각 계약이전이 무산될 경우 처리방안, 계열 저축은행 정리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실 징후 발생 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정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기금손실 및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나. 부실금융기관 일괄매각(Package) 방식 도입

공사는 2011년도 영업정지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인수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각방식으로서 일괄매각(Package)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사는 영업권이 수도권인 저축은행과 지방 소재 저축은행을 패키지로 구성하거나, 자산 연계성이 높은 복수의 계열사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등 인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입찰 경쟁률을 높이고 인수 프리미엄을 극대화하였다.

〈표Ⅵ-7〉 2011년 중 일괄매각(Package) 계약이전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일괄매각 대상	결 과	일괄매각 장점
중앙부산·도민·부산2 저축은행	대신증권에 일괄매각하여 계약 이전 완료	- 인수 시너지를 높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패키지를 구성하여 기금손실을 최소화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	일괄매각 계약 이전 절차 진행 중	- 영업구역 및 계열사의 자산 연계성 등을 고려한 패키지를 구성하여 정리함으로써, 여신 등 관리주체가 일원화됨에 따라 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제일2·에이스 저축은행	일괄매각 계약 이전 절차 진행 중	

제3절 부실금융기관 특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기관 특수자산 현황

가. 개 요

2011년 2월 17일 부실저축은행들의 대규모 영업정지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당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 등 비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이 주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을 통해 국내외 건설, 선박 등의 사업에 불법 투자한 사실을 포착하였다.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SPC 자산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80여개 사업장(122개 SPC)에 약 4.1조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사의 추가 조사를 통해 86개 사업장(148개 SPC)에 약 4.7조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조항(「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 금융기관이 특수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하는 페이퍼 컴퍼니

〈표Ⅵ-8〉 부산계열 저축은행 영업목적별 SPC 대출 잔액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 분	영업목적별 SPC	대출 잔액
건 설 업 (109)	아파트 · 주상복합 · 오피스텔 등(82), 골프장(10), 납골당(4), 공장 · 조선소(4), 상가 등(9)	36,593
해외건설 (12)	캄보디아(9), 인도네시아 발리(1), 독일풍력(2)	5,296
선박투자 (9)	선박회사(9)	3,567
금 융 업 (8)	리스(캐피탈)(2), 서울신용평가 주식취득(3), 주식투자(3)	226
기 타 (10)	화학물질 탱크터미널(2), 모래사업(2), 태양에너지 개발(1), 운전학원(1), 쇼핑 공장용지 분양 등(4)	831
합 계 (148)		46,513

한편 SPC채권, PF채권, 고서화, 예술품, 선박, 고가 차량 등 특수자산의 방대한 규모와 복잡·다양성, 사업장 관리 및 다각적인 매각전략 수립 필요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수자산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회수율을 극대화시켜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염원 또한 증대되었다.

나. 특수자산 전담 조직 신설

통상 부실저축은행 정리는 경영관리, 파산재단 관리, 부실자산 관리 등의 업무를 프로세스별 수행 주체와 책임을 분리하여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공사는 특수자산의 경우 기존의 부실자산과는 그 유형이 다르고 자산 및 소유구조가 복잡·다양함에 따라 경영관리 시부터 최종 회수시점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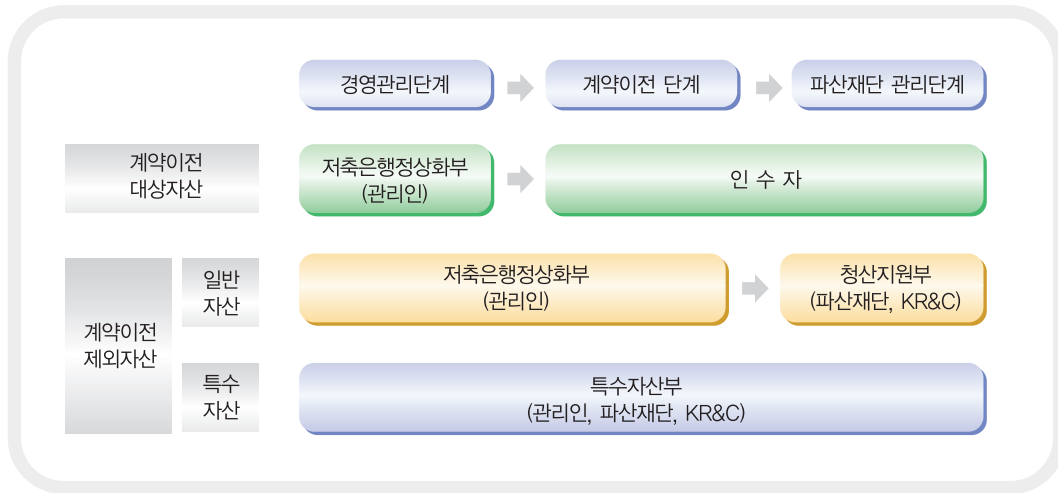
이에 공사는 2011년 7월 1일 우선 TF팀(특수자산 TFT)를 설치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하에 정원을 확충한 후 직제규정 개정 및 예산 조정 등을 통해 2011년 8월 26일 특수자산 전담부서(특수자산부)를 신설하였다.

특수자산 전담조직 정비 경과

- 2011. 2. 17 : 부산,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 2. 19 :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 2. 23 :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 2011. 3. 15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착수
- 2011. 4. 29 :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경영개선명령(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 2011. 5. 9 :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본점 점거농성 시작
- 2011. 7. 1 : 특수자산 TFT 설치
- 2011. 8. 26 : 특수자산부 신설



〈그림Ⅵ-3〉 정리단계별 자산관리 전담 체계



2. 부실금융기관 특수자산 관리 체계 마련

가. 특수자산 관리 노력

공사는 우선 특수자산의 현황 파악이 시급함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과 부산저축은행을 점거 중이던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협조 요청을 하여 막대한 양의 채권서류 등을 확보함으로써 특수자산의 권리관계, 사업의 진행정도(부지매입, 인허가, 분양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이어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서류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또는 현금유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는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이 차명주주 및 임원을 내세워 SPC를 설립한 후 국내외 건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공사는 사내외 법률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률검토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SPC의 명의주주·임원으로부터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SPC 주주에 대하여는 주식처분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SPC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치분 신청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특수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수자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특수자산 매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매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매각자문위원회 현황

- * 구 성 : 학계, 금융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특수자산부장 등 6명
- * 임 기 : 1년, 연임 가능
- * 역 할 : 특수자산 매각 관련 심의·자문
- * 회의주기 : 월 1회 (필요시 수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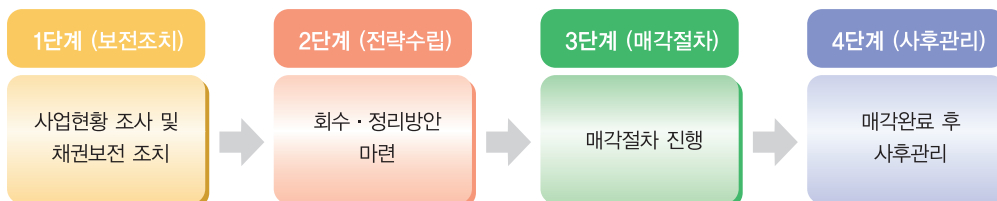
나. 특수자산 정리 계획

특수자산의 정리 절차는 대상 사업의 특성과 담보물의 시장성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별·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수립하고 이후 매각 주관사 선정과 더불어 공개입찰 매각 등의 방식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특수자산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정리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추진하고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또는 자산별 특성에 부합하는 특수자산 정리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공사는 과거 우수 매각사례, 미매각 사유, 사업 진행상황 및 장애요인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잠재투자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단계에서는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 시기를 조정하고 매각 우선순위 및 공동매각 여부 등을 결정하여 잠재투자자 유치 등 매각 여건이 조성된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VI-4〉 특수자산 정리 절차 예시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주요 업무사례 발표>

1.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업무보고서 제출

2. 파산관재인 선임

3.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업무보고서 제출

4.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업무보고서 제출

5. 파산관재인 선임 및 업무보고서 제출

제7장

파산재단 및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제1절 파산재단 관리

1. 파산재단 관리 현황

가. 공사의 파산관재인 역할

2000년 12월 20일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는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기관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법원의 허가권, 감사위원의 동의권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부칙 제3조는 “동법 시행 당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부보금융기관 파산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동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추가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2월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8에도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말 현재 전국 69개 부보금융기관 파산재단 중 68개 파산재단에 공사 파산관재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되어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Ⅶ-1〉 파산관재인 선임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체 파산재단 ¹⁾	파 산 관 재 인		
		공사 단독	변호사 단독	공 동 ²⁾
파산재단수	69	64	1	4

주 : 1) 법적종결재단(389개) 제외, 공적자금 미투입된 고려·동서증권 파산재단 및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 제외

2) 공사(또는 직원)가 변호사 등과 공동으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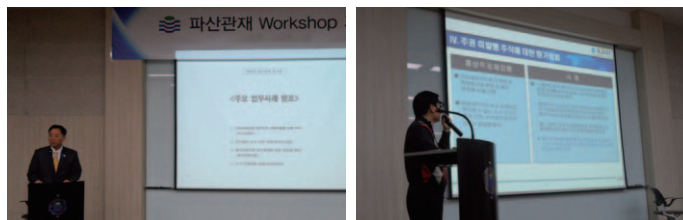
나.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

공사는 2007년 7월부터 지역통할책임자 제도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파산재단을 8개 광역권 별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파산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 1인이 동일 광역권내 수개의 파산재단을 맡아 1개의 사무실에서 이들 파산재단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파산재단 직원 및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현금 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무실 통합에 따라 임차비용, 건물관리비, 소모품 등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등 파산재단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순환교체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1년 중 파산관재인 간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파산관재인의 근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파산관재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의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관재인과 파산재단 보조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 보조인이 부동산 매각, 부실채권 회수업무 등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실시하였으며, 자금회수율 및 경비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파산재단 및 파산관재인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적이 부진한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해당 파산관재인을 교체하고 있다.



다. 채무조정 활성화

공사는 파산재단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2010년부터 “파산재단 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방안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파산이 예상되는 일반법인의 채무조정을 허용하였으며, 소액채무자 중 재산이 없는 급여 생활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재활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공사는 2011년 6월 파산재단의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정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는 공사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채권회수와 채권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지원 자금 회수 등 파산채권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함이었다.

2. 자산환가 및 배당 극대화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의 개별매각을 지양하고 자산유형별로 통합하여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 매각정보 안내” 코너를 신설·개선하여 부동산 수요자의 공매물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파산재단 보유 부동산에 대해 2011년 중 11회의 합동공매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 228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파산재단 보유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거래가 없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파산재단별 개별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케이알앤씨(KR&C)*와 합동으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2011년 중 4회의 공개입찰 등의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 결과 총 5건, 1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 케이알앤씨(KR&C)는 한아름중금·한아름금고를 흡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리금융공사(RFC)를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2차, 2008.8월)」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로 전환(2009.11월)한 정리금융기관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회수익문, 추정손실, 비업무용 부동산 등) 등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 등을 수행

또한 파산재단 보유자산 중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자산(골프·콘도회원권 등)에 대해서도 회원권 거래소를 통한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2011년 중 총 8건, 52억원의 매각실적을 기록하였다.

〈표Ⅶ-2〉 파산재단 보유자산 매각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부 동 산	합동공매 실시건수	10	10	11
	매각건수 (금액)	20 (44)	58 (561)	42 (231)
비상장주식	합동공매 실시건수	4	4	4
	매각건수 (금액)	2 (255)	5 (420)	4 (1)
골프 · 콘도 회원권 등	매각건수 (금액)	38 (10)	47 (4)	9 (52)

아울러 공사는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자산관리시스템(FAST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해 파산재단 자산의 유형별 보유현황 및 매각대상 자산 등을 상시적 ·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파산재단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는 파산재단의 파산채권 관리 및 배당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전산시스템(CDIS)”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재단별로 연간 배당 목표액을 부여하고 이를 확인 및 독려함으로써 배당 관련 업무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사는 이처럼 파산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배당을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등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3. 파산재단의 합리적 종결 추진

공사는 파산재단을 파산초기재단, 자산집중관리재단, 소송집중관리재단, 종결준비재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환가가 대부분 완료되고 소송 실익이 없는 파산재단 등을 종결준비재단으로 선정하여 관할 법원의 허가(협의)를 통해 잔여자산 평가 · 매각과 최후배당을 거쳐 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환가가 정제되어 재단 유지비용이 회수액을 초과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458개 파산재단 중 389개 파산재단은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69개 파산재단도 잔여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종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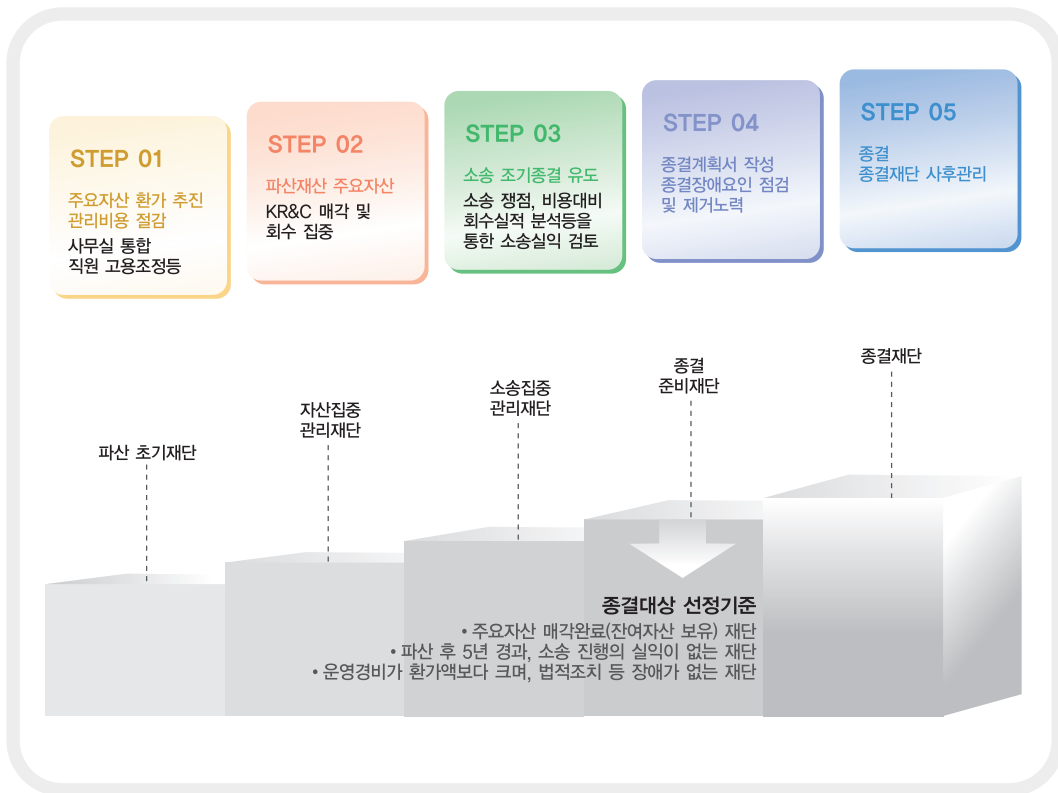
한편, 파산이 종결된 부실금융기관의 기록보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종결 파산재단별로 파산 절차의 주요 경과사항 및 중요 보존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기록한 「파산업무수행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및 관련 기관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표Ⅶ-3〉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증권	저축은행	신협	합계
총 파산재단 (A)		5	10	4	22	92	325	458
종결	종결재단 (B)	1	9	2	2	57	318	389
	종결율 (B/A×100)	20	90	50	9	62	98	85
진행재단 (A-B)		4	1	2	20	35	7	69

〈그림Ⅶ-1〉 파산재단 단계별 관리방안



제2절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관리

1.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 현황

공사가 정리금융기관을 통해 인수한 자산은 2011년도 635억원(인수액 기준)을 포함하여 2011년 말까지 총 53조 5,019억원(인수액 기준)이다.

제일은행 매각 시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하지 않은 자산,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자산, 기타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미인수 자산의 인수를 위해 1999년 12월에 설립된 정리금융 공사(RFC, 現 KR&C로 전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일은행 으로부터 7조 8,549억원, 5개 인수은행(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으로부터 1,588억원, 5개 생명보험회사(국민·동아·태평양·한덕·대한)로부터 3,550억원, 3개 금융투자사(한투·대투·현투증권) 매각과정에서 1조 3,072억원, 460개 파산재단으로부터 3,286억원, 20개 저축은행 (한마음·한중·아림·좋은·대운·홍익·경북·현대·분당·전북·으뜸·전일·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경은)으로부터 5,079억원, 한아름종금 및 한아름금고 흡수 과정에서 42조 9,895억원 등 2011년 말까지 총 53조 5,019억원(인수액 기준)의 자산을 인수 하였다.

〈표Ⅶ-4〉 2011년 중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파산재단	2,944	44	감산신탁 외 33개 파산재단
	저축은행	10,134	591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경은저축은행

〈표Ⅶ-5〉 정리금융기관 인수자산(누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채권액	인수액	비 고
케이알앤씨 (KR&C)	은 행	98,640	80,137	6개 은행(제일은행 포함)
	보 험	4,032	3,550	5개 생명보험
	금융투자	25,324	13,072	3개 금융투자사
	파산재단	61,038	3,286	460개 파산재단(5개 은행, 10개 보험, 4개 금융투자, 22개 증금, 80 ¹⁾ 개 저축은행, 339 ²⁾ 개 신탁)
	저축은행	24,327	5,079	20개 저축은행
	소 계	213,361	105,124	-
한아름증금 ³⁾	증 금	367,503	363,540 ⁴⁾	16개 증금
한아름금고 ³⁾	저축은행	87,719	66,355 ⁴⁾	41개 저축은행
합 계		668,583	535,019	-

주 : 1) 미인수 저축은행 파산재단 12개 제외

2) 2010년 1월 1일 신탁 중앙회로 이관된 14개 파산재단 포함

3)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기관

4) 예금대지급채권 포함

2. 부실금융기관 인수자산의 효율적 관리

케이알앤씨(KR&C)는 부실금융기관의 계약 이전절차 진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을 신속하게 인수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의 조기종결 추진 등을 위해 파산재단으로부터 잔여자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현재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 자산의 잔액은 18조 8,917억원으로, 이 중 12조 3,329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조 5,588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자산가치 제고 및 적기 회수를 위해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인수·합병(M&A), 자산유동화에 의한 매각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제한 주식, 회사채, 전환사채 등 케이알앤씨(KR&C)가 보유 중인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자산별 특성에 맞는 회수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Ⅶ-6〉 케이알앤씨(KR&C) 보유 자산(잔액)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자산구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 계
대출채권	551	64,516	65,067
유가증권	16,791	-	16,791
부 동 산	730	1,072	1,802
구상채권	105,257	-	105,257
합 계	123,329	65,588	188,917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저축은행 감사 Workshop

• 일시 : 2011.10.26(수) • 주최 :  예금보험공사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제8장

건전경영 풍토 조성 및 부실책임 추궁

-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1절 부보금융기관 건전경영 풍토 조성

1. 저축은행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임직원 등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이 2011년 중 발생한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저축은행 건전성을 도모하고 저축은행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실사례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교육을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업무 취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규정과 알아두면 유익한 부실 유형별 세부 사항 및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공사는 2011년 4월 임직원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재산 상태 등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 준법감사인 및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률 및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무와 책임, 부실 예방을 위한 위법·부당행위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저축은행 감사를 대상으로 “상호저축은행 감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건전경영 풍토 조성 교육의 확대

공사는 업권별 금융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보금융기관의 건전경영 풍토 조성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1년 4월 금융투자협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기반시설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경영 풍토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준법감시인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감시인 워크샵에 참가하여 부실책임 추궁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제2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1.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효율성 제고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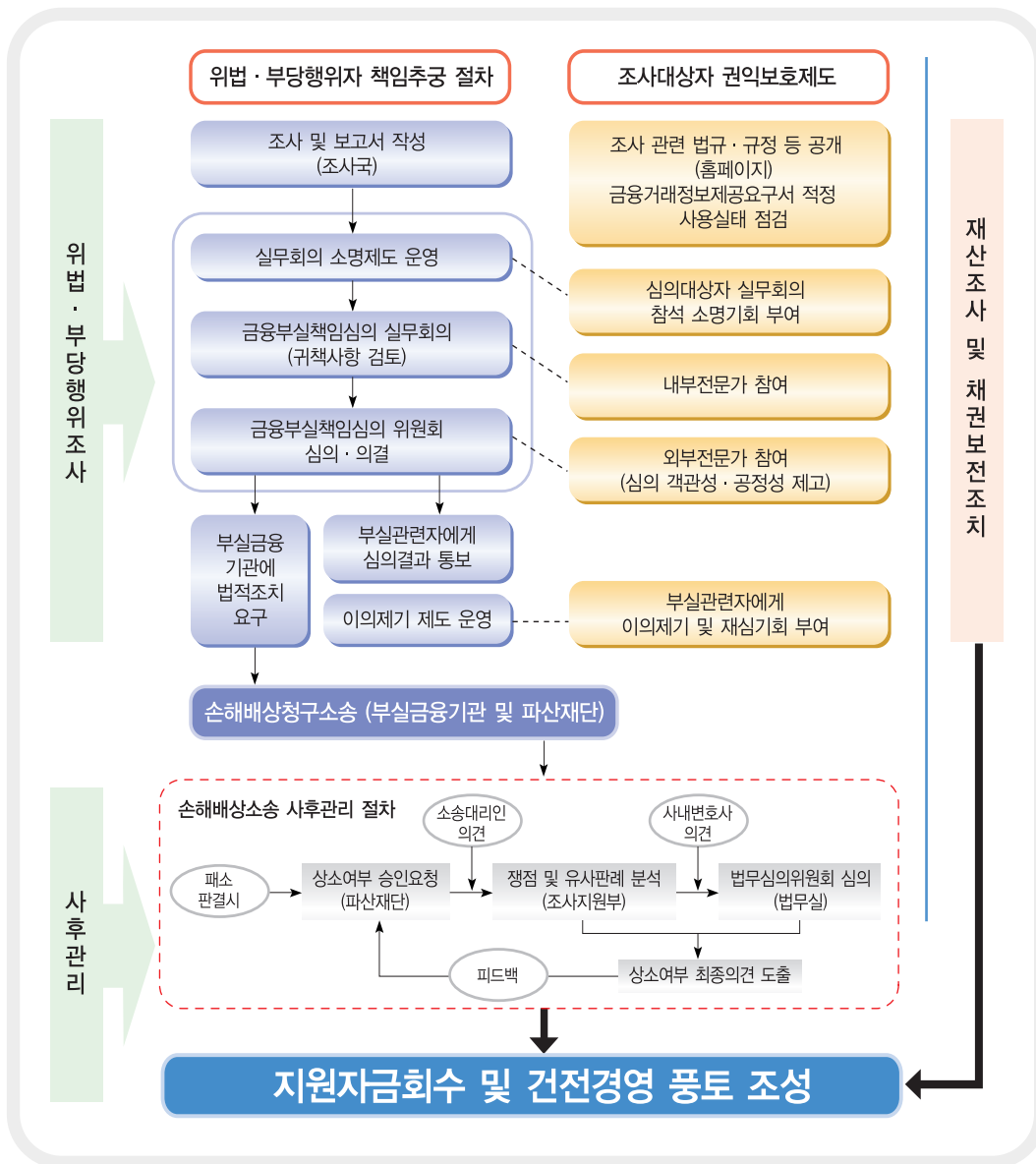
*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특히 공사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이 밀착하여 불법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조사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舊 조사부(부실금융기관 조사 담당)”와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부실채무기업 조사 담당)”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국 1부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견 인력을 포함하여 2011년 말 현재 총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견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하는 등 위법·부당행위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 등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2011년 8월 “귀책 제외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귀책제외 유형을 표준화하여 심의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귀책대상자 간 형평성 및 소송부담을 완화시켜 귀책대상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 하였다. 부실책임심의 결과 2011년 말 현재 총 491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5,829명에 대하여 18조 7,935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 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그림Ⅷ-1〉 위법·부당행위자 책임추궁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표Ⅷ-1〉 부실금융기관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 계
부실금융기관 수	15	6	18	22	105	325	491
부실관련자 수	191	65	244	160	1,023	4,146	5,829
손실초래금액	14,080	33,266	30,482	55,977	44,951	9,179	187,935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

2.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강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1,421건, 1조 9,198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2〉 부실금융기관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건,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 계
부실금융기관 수	15	6	18	22	103	325	489
피 고 수	191	83	276	181	1,309	7,256	9,296
청구건수	93	31	84	35	350	828	1,421
청구금액	1,004	342	2,435	3,047	6,481	5,889	19,19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 인력 중심의 “소송지원점검반”을 구성하여 논리적·체계적 변론 및 다양한 증거자료 제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산재단 손해배상소송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를 제고를 위한 소송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 손해배상소송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1년 중 영업 정지된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초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변호사 등 지역별로 담당자를 선임하고, PF 대출 등 신규 부실유형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

할 수 있도록 법률논리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1년에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의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하여 과거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의 귀책유형별 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회수 극대화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조회자료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하여 2,563건의 (가)압류 및 224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총 2,823억원을 회수하였다.

〈표Ⅷ-3〉 부실금융기관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 계
(가)압류건수	37	7	55	123	877	1,464	2,563
(가)압류금액	76	47	241	1,010	4,000	2,272	7,646
가처분 건수	10	1	1	41	90	81	224
회 수 금 액	102	54	217	660	1,023	767	2,823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협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



제3절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

1.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 노력

공사의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 말까지 마무리하였고,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하여 2007년 상반기 예비조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2007년부터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 이후, “舊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2008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전담 부서인 “舊 조사부”와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개편됨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1년 말 현재 865명에 대하여 14조 8,917억원 상당의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Ⅷ-4〉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억원)

현장조사 기업수	부 실 책 임	
	부실관련자 수	손실초래금액
966	865	148,917

2.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 강화

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라 부실금융기관과 그 파산재단은 부실관련자에 대해 187건, 9,800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표Ⅷ-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명, 건, 억원)

기업	피고수	청구건수	청구금액
148	1,176	187	9,800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보전조치 요구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법적조치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 소송 담당 실무자와 회의를 통해 소송 및 채권보전조치 관련 자문 등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부실금융기관 등을 대위하여 부실관련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소가, 소송 진행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가 소송에 보조 참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을 보완하는 등 소송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 부실채무기업 부실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 및 회수 극대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2011년 말 현재 부실관련자 재산에 대하여 975건의 (가)압류 및 233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 총 1,174억원을 회수하였다.

〈표Ⅷ-6〉 부실채무기업 관련 법적조치 및 회수실적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건, 억원)

(가) 압류		가처분 건수	회수금액
건 수	금 액		
975	6,721	233	1,174

제4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 국내 재산조사 강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재산자료 제공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부실관련자 조사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명시함으로써 조사권을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2011년 3월 23일에 실효(失効) 예정이었던 “금융기관 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은 2014년 3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되어 실효성 있는 부실책임추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는 2011년 말까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총 925,785명에 대하여 본인명의 재산의 존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발견재산에 대하여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그 파산재단에 채권보전 및 회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2011년 말 현재 (가)압류 104,275건과 가처분 1,918건의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며 총 7,689억원을 회수하였다.

〈표Ⅷ-7〉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법적조치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억원)

구 분	조사대상인원	(가)압류		가처분 건수	회수금액
		건 수	금 액		
부실관련자	925,785	104,275	125,836	1,918	7,689

한편 공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의 대규모 부실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다 신속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관련자의 책임 재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재산 2,590 억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지원자금의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 해외 재산조사 확대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 재산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해외 재산조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미국을 조사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해외 재산조사 전문회사를 활용한 위탁조사를 본격 착수하였다.

공사는 2011년 말까지 국외도피 및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부실관련자 2,199명에 대해 해외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미화 479만달러를 회수하였으며, 은닉재산이 확인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현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그 동안 미국·캐나다·일본·호주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던 해외 재산조사를 2011년부터 홍콩·뉴질랜드·필리핀으로 확대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강화하여 해외 은닉재산 환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표Ⅷ-8〉 연도별 해외 은닉재산 회수 현황

(단위 : 천 USD)

년 도	2003~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금 액	3,044	-	2	345	1,401	4,792

3.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회수 실효성 제고

공사는 공적자금 등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해 내부정보 입수 등을 통한 엄격한 부실책임 추궁과 이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공사는 2011년 말까지 총 165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 중 27건에 대해 288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14.5억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는 부실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국내외에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금융기관 부실발생 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와 공사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상호 연동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신고센터의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LA 및 뉴욕)·캐나다(토론토)·일본·호주(시드니)·뉴질랜드(오클랜드)·필리핀 한인회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각 한인회마다 교민 홍보위원을 위촉하여 활발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캐나다에 수신자 부담으로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를 운영함으로써 현지 교민이 상시적으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공사는 2011년 1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신문(조선일보, 매일경제)에 각 1회 “부실금융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관련 광고를 실시하고, 지하철에도 광고를 게재하는 등 신고센터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표Ⅷ-9〉 연도별 신고센터 접수건수, 회수건수 및 회수금액 현황

(2011년 12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접수건수	21	12	17	10	22	21	15	19	12	16	165
회수건수	-	1	1	2	3	8	4	2	4	2	27
회수금액	-	3,156	374	231	11,791	6,184	2,637	2,830	605	1,033	28,841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제9장 기금 관리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제2절 예금보험기금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이하 '상환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1. 안정적 조성

가. 특별기여금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사는 2011년에 총 1조 1,087억원의 특별기여금을 수납하였다.

〈표IX-1〉 금융권별 특별기여금요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¹⁾
법정한도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

〈표IX-2〉 금융권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¹⁾	합계
			생보	손보				
2003	477,476,429,913	15,583,224,891	88,888,017,031	18,472,746,000	2,051,155,000	22,249,552,000	-	624,721,124,835
2004	495,600,167,905	16,808,361,665	97,815,297,519	19,780,120,619	562,468,000	26,428,683,000	-	656,995,098,708
2005	487,166,510,833	14,540,165,582	106,857,085,000	21,851,803,423	496,537,000	31,858,110,000	-	662,770,211,838
2006	498,681,846,988	15,144,470,993	116,019,390,370	24,194,140,937	636,385,000	36,957,658,017	21,636,276,543	713,270,168,848
2007	502,689,354,851	15,640,959,000	126,530,624,919	27,765,668,399	722,757,000	43,004,233,839	11,608,513,513	727,962,111,521
2008	497,628,429,865	18,450,538,082	136,365,120,000	31,887,977,512	794,110,000	49,122,536,517	12,910,122,846	747,158,834,822
2009	596,495,263,169	16,924,950,377	143,006,160,079	35,158,267,859	1,013,841,000	59,293,898,815	13,675,874,192	865,568,255,491
2010	681,137,103,049	21,309,273,266	153,430,348,000	40,861,760,000	1,899,113,000	71,512,241,512	16,962,417,699	987,112,256,526
2011	778,873,175,496	22,707,528,407	165,012,412,538	48,650,634,000	1,169,424,000	71,802,311,638	20,479,299,838	1,108,694,785,917
합계	5,015,748,282,069	157,109,472,263	1,133,924,455,456	268,623,118,749	9,345,790,000	412,229,225,338	97,272,504,631	7,094,252,848,506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수령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수납하지 않고 있다.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 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표IX-3〉 2002년 12월 31일 이전 예보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1998	21,015,044,000,000	-	21,015,044,000,000
1999	22,484,903,000,000	-	43,499,947,000,000
2000	8,940,700,000,000	-	52,440,647,000,000
2001	31,059,300,000,000	1,464,000,000,000	82,035,947,000,000
2002	3,660,000,000,000	4,721,500,000,000	80,974,447,000,000
2003	-	9,737,144,000,000	71,237,303,000,000
2004	-	16,622,737,500,000	54,614,565,500,000
2005	-	18,090,401,500,000	36,524,164,000,000
2006	-	19,063,614,000,000	17,460,550,000,000
2007	-	6,067,243,500,000	11,393,306,500,000
2008	-	11,393,306,500,000	-
합 계	87,159,947,000,000 ¹⁾	87,159,947,000,000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2011년에 7,800억원을 5년 만기 고정금리채권으로 공모 방식을 통하여 발행하였다. 한편, 2011년 중 만기도래한 상환기금채 3조 7,30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2011년 말 발행 잔액은 23조 7,400억원이다.

〈표IX-4〉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04	6,500,000,000,000	-	6,500,000,000,000
2005	7,440,000,000,000	-	13,940,000,000,000
2006	2,870,500,000,000	315,500,000,000	16,495,000,000,000
2007	2,720,000,000,000	45,000,000,000	19,170,000,000,000
2008	8,800,000,000,000	10,000,000,000	27,960,000,000,000
2009	5,860,000,000,000	6,500,000,000,000	27,320,000,000,000
2010	6,810,000,000,000	7,440,000,000,000	26,690,000,000,000
2011	780,000,000,000	3,730,000,000,000	23,740,000,000,000
합 계	41,780,500,000,000	18,040,500,000,000	23,740,000,000,000

마.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융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 대책에 따라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1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차입금 잔액은 2,336억원이다.

〈표IX-5〉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기관	차 관 ¹⁾	재정융자 특별회계	소 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합 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0,915	2,336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2. 지 원

가. 개 관

공사는 상환기금을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방법으로의 자금 지원 등에 지출한다. 상환 기금은 2011년 총 4.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액 출연 형태로 지원되었다.

〈표IX-6〉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1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합 계
은 행	-	-	-	-	-	-
금융투자	-	8,736,445	-	-	-	8,736,445
보 험	-	46,167,917	-	-	-	46,167,917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	410,000,000	-	-	-	410,000,000
신 협	-	-	-	-	-	-
합 계	-	464,904,362	-	-	-	464,904,362

2011년 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849억원이다. 이중 부보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 18조 6,021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 등이 지원되었다.

〈표IX-7〉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¹⁾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¹⁾	합 계
은 행	22,203,879,614,160	13,909,304,352,211	8,106,444,073,801	-	-	44,219,628,040,172
금융투자	9,976,873,000,000	414,332,026,466	2,123,943,660,527	-	11,270,816,793	12,526,419,503,786
보 험	15,919,758,000,000	3,119,162,832,669	349,481,101,882	-	-	19,388,401,934,551
종합금융	2,693,050,000,000	743,110,579,116	-	-	18,271,810,047,468	21,707,970,626,584
저축은행	100,000,000	416,147,029,007	-	596,860,000,000	7,289,213,136,680	8,302,320,165,687
신 협	-	-	-	-	4,740,151,481,096	4,740,151,481,096
합 계	50,793,660,614,160	18,602,056,819,469	10,579,868,836,210	596,860,000,000	30,312,445,482,037	110,884,891,751,876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은행

2011년 중 공사가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 금융투자

한국투자금융지주, 하나대투증권은 과거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매각 시 공사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사후손실보전 대상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사에 사후손실보전을 요청 하였으며, 공사는 2011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9백만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3) 보험

KB생명이 과거 한일생명 인수 시 공사와 체결한 출연약정서에 의거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한 휴면보험금에 대하여 공사에 정산을 요청 하였으며, 공사는 2011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46백만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4) 저축은행

공사는 새누리저축은행이 제기한 출연금 청구 소송에 따른 서울 고등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2011년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4억원을 추가 출연하였다.

〈표IX-8〉 연도별 저축은행 예금보험금 지급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저축은행 수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
1998	17	14,705
1999	19	14,272
2000	11	6,500
2001	5	29,537
2002	10	7,719
2003	7	5
2004	8	26
2005	7	1
2006	8	3
2007	2	128
2008	-	△4
2009	1	-
2010	-	-
2011	-	-
합 계	95	72,892

〈표IX-9〉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기 관	출 자		출 연		대 출	
	2010년 이전	2011년	2010년 이전	2011년	2010년 이전	2011년
경기(舊코미트)	-	-	254	-	1,654	-
경북(舊한우리)	-	-	81	4	-	-
대전(現 대전)	-	-	-	-	102	-
도민(금강)	-	-	28	-	709	-
동원(한국투자)	-	-	63	-	783	-
부민(부산)	-	-	243	-	-	-
부산2	-	-	-	-	271	-
상업(舊현대)	-	-	701	-	-	-
새누리	-	-	13	-	21	-
솔로몬(舊골드)	-	-	663	-	-	-
신충북	-	-	-	-	161	-
아림	-	-	-	-	615	-
유니온	-	-	39	-	518	-
제이원	-	-	325	-	-	-
조일	-	-	29	-	738	-
충남(舊새은양)	-	-	-	-	45	-
충일	-	-	-	-	89	-
텔슨(舊신한국)	-	-	775	-	-	-
하나로	-	-	422	-	-	-
한마음	-	-	521	-	-	-
해동(경기)	-	-	-	-	263	-
케이알앤씨(KR&C)	1 ¹⁾	-	-	-	-	-
합 계	1	-	4,157	4	5,969	-

주 : 1) 2001년 12월말 정리금융공사(RFC)로 합병된 한아름금고에 대한 출자

3.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둘째,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기관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사는 2011년에 1조 2,679억원을 회수하고, 2011년 말까지 총 48조 7,82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0〉 상환기금의 회수(2011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 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266,784,635,478	225,614,844	75,810,710,917	-	-	342,820,961,239
금융투자	-	55,853,119	87,986,096,842	-	-	88,041,949,961
보 험	390,813,380,000	9,212,820	-	-	3,244,397,449	394,066,990,269
종합금융	3,325,129,381	-	-	-	265,486,944,463	268,812,073,844
저축은행	-	120,920,055	-	-	171,071,888,811	171,192,808,866
신 협	-	-	-	-	2,969,859,697	2,969,859,697
합 계	660,923,144,859	411,600,838	163,796,807,759	-	442,773,090,420	1,267,904,643,876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표IX-11〉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금 용 권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¹⁾	대출금 회수	파산 배당금 ¹⁾	합 계
은 행	16,079,684,461,188	69,770,625,266	5,845,460,085,697	-	1,818,139,532,616	23,813,054,704,767
금융투자	1,212,144,785,109	323,045,036,658	1,790,559,205,026	-	7,466,100,396	3,333,215,127,189
보 험	3,415,788,823,995	88,397,817,441	232,518,101,882	-	429,821,419,955	4,166,526,163,273
종합금융	138,256,473,509	5,931,643,350	-	-	8,215,922,494,919	8,360,110,611,778
저축은행	-	34,127,082,050	-	596,860,000,000	5,070,828,773,158	5,701,815,855,208
신 협	-	401,687,311	-	-	3,407,460,406,405	3,407,862,093,716
합 계	20,845,874,543,801	521,673,892,076	7,868,537,392,605	596,860,000,000	18,949,638,727,449	48,782,584,555,931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

(1) 은행

공사는 2011년 중 신한금융지주회사 블록세일 및 제주은행 장중매각 등으로 총 2,701억원을 회수하였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경우 2011년 7월 잔여 지분 보통주 0.61%(291만주)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1,486억원을 회수하였고, 사후이익 공유 및 배당금을 통해 59억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특히, 2011년 블록세일을 통해 공사는 과거 조흥은행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신한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전량 매각 완료하였는 바, 이로써 그 동안의 조흥은행 부실 관련 지원액(2조 7천억원) 대비 2조원을 초과한 4조 7천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 173%를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배당금을 통해 1,148억원을 회수*하였고, 제주은행 지분 보통주 0.64%도 장중매각을 통해 총 8억원을 회수하였다.

* 우리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은행계정 및 종합금융계정 합산 기준

한편 공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매각과 관련하여 2011년 5월 1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 후 매각절차를 재개하였으나, 매각 여건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지분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의 무산 등으로 예비입찰 실시 후 유효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매각절차가 중단되었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11년 중 서울보증보험의 상환우선주 미상환잔액 3,414억원을 전액 회수하였고, 대한생명 배당금을 통해 494억원을 회수하였다.

(3) 기타

공사는 2011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증권금융 지분 3.53%를 매각하여 324억원을 회수하였고, 2011년 3월에는 한국금융안전 지분 14.67%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41억원을 회수하였다. 한편,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SG세계물산 지분 0.16%를 장중매각을 통해 1억원을 회수하였다. 이 외에도, 하이닉스반도체 배당금으로 13억원을 추가 회수하였다.

이처럼 공사는 2011년 중 장중매각, 공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케이알앤씨(KR&C, 舊 정리금융공사) 보유 주식을 정리하여 총 441억원을 회수하였다.

다.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케이알앤씨(KR&C)는 인수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위하여 전통적 방법인 만기회수는 물론 M&A방식에 의한 매각, 합작특수목적회사(J.V.SPC)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 자산유동화 증권(ABS) 발행 등 다양한 첨단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 2011년 말까지 총 39조 2,335억원을 회수하였다.

2011년 중 케이알앤씨(KR&C)는 주요 보유 유가증권의 공사 매각 위임, 대출채권의 원리금 추심, 국내외 소송 절차 진행, 공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 및 구상채권 파산배당 등을 통해 3,297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2〉 케이알앤씨(KR&C)의 자산매각 등을 통한 회수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자산구분 ¹⁾	대상 자산	회수액	회수 방법
2011년 회수액	대출채권	원화 채권	767	직접 추심 및 소송
		외화 채권	77	
		소 계	844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958 ²⁾	공개경쟁입찰, 장종매각, 배당
	부 동 산	업무용 빌딩 등	-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1,495	파산배당
	합 계		3,297	
누 적	대출채권	원화 채권	100,930	국제입찰, NPL매각, ABS 발행 등
		외화 채권	30,660	
		소 계	131,590	
	유가증권	상장 및 비상장 주식	49,616	공동매각, 블록세일 등
	부 동 산	업무용 빌딩 등	6,220	공매 및 수의계약
	구상채권	예금대지급 채권 등	204,909	파산배당
	합 계		392,335	

주 : 1) 공적자금 지원 분류 상 예금대지급 계정에 해당하는 한아름중금 및 한아름금고의 자산 중 예금대지급 채권이 아닌 대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매각액을 포함

2) 공사에 매각 위임된 케이알앤씨(KR&C) 보유 주요 유가증권의 2011년 매각 회수액(441억원) 포함

라. 파산배당

2011년 중 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을 통하여 은행·보험사 파산 재단으로부터 32억원, 종합금융·저축은행 및 신협 파산재단으로부터 4,396억원 등 총 4,428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하여 2011년 말까지 총 18조 9,49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13〉 금융권별 파산배당 회수¹⁾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금 용 권	파산재단 수	회 수 액	
		2011년	1999년~2011년 총회수액
은 행	5	-	18,181
보 험	10	32	4,298
금융투자	4	-	75
종합금융	22	2,655	82,159
저축은행	92	1,711	50,708
신 협	325	30	34,075
합 계	458	4,428	189,496

주 : 1) 공사가 파산재단(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및 케이알앤씨(舊 한아름증권·금고를 통해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로부터 수령한 파산배당 회수금액

마.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10년 말까지 대출 형태로 총 5,96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련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였다. 또한, 2011년 말까지 출연금 정산 등을 통해 회수한 지원금은 총 5,217억원이며, 2011년 중 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2억원, 한투·대투증권으로부터 1억원,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손해 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1억원을 회수하는 등 총 4억원을 회수하였다.



제2절 예금보험기금

1. 재원 조성의 다양화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기관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상환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공사는 2011년 3월 개정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 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각 업권별 부보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와 예금보험기금 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특별계정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예금보험료율이 기존 0.35%에서 0.40%로 인상되었다. 공사는 2011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조 2,231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여 이를 특별계정을 포함한 7개 계정을 조성하는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표IX-14〉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구 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¹⁾	15/10,000 ²⁾	15/10,000	40/10,000 ³⁾
법 정 한 도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50/10,000

- 주 : 1) 2007년부터 금융투자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료율 30% 인하
 2) 보험회사의 설립경과연수·신용도 및 재무상황의 건전성을 참작하여 표준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 인상 또는 인하
 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준 35/10,000)

〈표IX-15〉 금융권별 예금보험료 수입

(단위 : 억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³⁾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4,775	312	2,580	535	73	667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1	1,742	12,231
합 계	44,963	2,655	28,539	6,564	251	12,931	1,742	97,645

-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설치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탁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부보금융기관이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연금은 상환 대책에 따라 설치된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한 출연금은 현행 예금 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공사는 2011년 중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2.3억원의 출연금을 수납하였다.

〈표IX-16〉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단위 : 백만원)

연 도	은 행	금융투자	보 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²⁾	합 계 ³⁾
			생명보험	손해보험				
2003 ¹⁾	30	-	650	200	-	-	-	880
2004	340	200	600	200	-	-	-	1,340
2005	220	200	-	-	-	1,250	-	1,670
2006	380	800	-	200	-	1,340	-	2,720
2007	-	-	-	-	-	-	-	-
2008	160	11,005	-	-	-	556	-	11,721
2009	766	4,312	419	342	17	777	-	6,633
2010	80	584	900	30	-	-	-	1,594
2011	30	-	-	-	-	1,200	-	1,230
합 계	2,006	17,101	2,569	972	17	5,123	-	27,788

주 : 1)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을 위한 특별계정은 출연금 수입 없음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 발행 및 상환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을 1조 2,000억원 발행하였다.

〈표IX-17〉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 액
2011	12,000	-	12,000
합 계	12,000	-	12,000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금융 기관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기관,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2007년에는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이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여 외부차입금 잔액이 없다.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0조 4,199억원을 차입하였고, 이 중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2011년 12월 중 1조 2천억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차입금 잔액은 9조 2,199억원이다.

〈표IX-18〉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 도	차 입 금 액 ¹⁾				상환금액	잔 액
	부보금융 기관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2009	-	-	-	-	-	-
2010	-	-	-	-	-	-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합 계	106,514	-	-	106,513	14,314	92,199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하였으며, 2006년 이전 동 계정을 제외한 외부차입금은 없음

2. 적시 지원

가. 개 관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방법으로의 자금 지원 등에 지출한다. 이에 따라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을 통하여 총 4조 5,275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1년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특별계정을 통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16개 부실저축

은행에 대하여 총 12조 5,92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IX-19〉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2011년)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	-	-	-	-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¹⁾	-	-	-	-	-	-
특별계정	972	58,513	65,450	567	418	125,920
합 계	972	58,513	65,450	567	418	125,920

주 : 1) 저축은행계정은 2011년 중 신규 자금 지원 없음

〈표IX-20〉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계 정 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	-	-	-	-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972	58,513	65,450	567	418	125,920
합 계	2,183	83,055	79,862	5,458	637	171,195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나. 금융권별 지원내역

(1) 저축은행(특별계정)

공사는 2011년 중 영업 정지된 16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가자금금을 포함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순자산부족분을 출연하거나 출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자산은 케이알앤씨(KR&C)로 계약이전하여 이에 따른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11년 중 영업 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IX-21〉 2011년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일	예금보험금 지급 (가지급금 포함)	출연, 출자 등	합 계
삼 화	1월 14일	2,474	3,463	5,937
부 산	2월 17일	5,770	23,721	29,491
대 전	2월 17일	1,415	8,160	9,575
부 산 2	2월 19일	4,453	14,028	18,481
중앙부산	2월 19일	586	1,968	2,554
전 주	2월 19일	350	1,802	2,152
보 해	2월 19일	2,063	6,212	8,275
도 민	2월 23일	559	264	823
경 은	8월 5일	382	852	1,234
프 라 임	9월 18일	4,629	-	4,629
대 영	9월 18일	1,426	-	1,426
제 일	9월 18일	10,795	-	10,795
제 일 2	9월 18일	3,421	-	3,421
토 마 토	9월 18일	18,916	-	18,916
에 이 스	9월 18일	6,564	-	6,564
파 랑 새	9월 18일	1,647	-	1,647
합 계		65,450	60,470	125,920

3. 회수 극대화

가. 개 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1년에 저축은행계정 및 특별계정을 통해 3,850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11년 말까지 총 1조 3,938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22〉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11년 및 누계)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파산배당금 등 회수	대출금회수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¹⁾
2011년	저축은행계정	-	217	1,412	597	38 ³⁾	2,264
	특별계정	-	-	1,426 ²⁾	160	-	1,586
	합 계	-	217	2,838	757	38	3,850
2003~2011년말 누계		2,530	785	6,489	4,096	38	13,93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2) 2011년 영업 정지된 대영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현대증권으로 경영권 이전)로 가자금(1,426억원) 회수

3) 으뜸저축은행 파산재단 배당으로 개산지급금(38억) 회수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1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2,838억원의 파산배당금 등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누계 실적으로 총 6,489억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에 경북저축은행 등 12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4,891억원을 대출하여 총 3,339억원을 회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추가로 757억원을 회수하여 누계실적으로 총 4,09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IX-23〉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금 용 권	파산배당금 등 회수 ¹⁾		대출금 회수 ¹⁾	
	2011년 중	2003~2011년말 누 계	2011년 중	2003~2011년말 누 계
저축은행(특별계정 포함)	2,838	6,489	757	4,096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다. 기금 건전성 제고

2003년 새로운 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한 이후 2006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목표 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공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7년 5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7년 10월 공사는 목표기금제의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체계 개편 등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국회에서는 2007년 12월 의원입법을 통하여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생명보험계정과 손해보험계정을 분리하고 부보금융기관의 수가 적은 계정은 목표규모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6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로 기금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예금보험료를 인하,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1년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예금보험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정리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6개 계정 외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동 특별계정은 2026년 말까지 존속하면서 각 업권별 예금보험료 수입의 일부 및 회수자금 등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달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의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11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부보예금의 0.35%에서 0.40%로 상향하여 저축은행의 자구노력 유도 및 수익자 부담의 보험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계정의 설치로 각 권역별 목표적립률이 5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목표도달 계정을 재산정하여 목표규모 상한에 도달한 금융투자계정,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계정의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면제하였다.



한편, 공사는 특별계정을 통해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정부 보증이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2011년 12월부터 공사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하여 특별계정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부채의 만기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2010년 9월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은행채의 신규 편입을 통해 운용자산을 다각화하고, 2010년 10월 자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반기별로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등 운용의사결정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함으로써 운용체계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2011년 2월 대규모 채권매도를 통해 매도차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였으며, 2011년 8월 투자자문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운용 지배구조 선진화를 도모하고 2011년 10월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 및 2011년 11월 여유자금 운용 관련 비상위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위험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저축은행계정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통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제10장

2011년도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제2절 결산 기준

제3절 결산 현황

제1절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계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 등 3개의 회계단위로 구분계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과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7개 계정으로 나누어 구분계리를 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11회계연도에는 삼덕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 이었다.



제2절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 중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유가증권의 평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누적금액은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고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의 회복이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감액손실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기간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

유가증권 중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공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한 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 처리하며 그 변동이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중대한 오류 및 회계변경에 의해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당기손익이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또는 감소)로, 당기손익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또는 감소)로 인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또는 감소)로 처리하고 있다.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지급준비금

보험사고 발생 및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기타충당부채(지급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다.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경상운영비의 과목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상운영비의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2.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보험료수입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수익 · 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II. 상환기금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 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

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라.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시 발생한 손익은 발생한 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다.

마.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바. 사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사채발행시부터 최종 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 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사.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 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총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3. 수익 · 비용의 회계처리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3절 결산 현황

1.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 통합)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구분회계단위인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간의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을 제거한 통합결산서를 작성한다.

구분회계단위별 재무 현황 및 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보험기금

(1) 재무 현황

2011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2조 1,525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5조 3,776억원(79.4%)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2011년 중 발생한 부실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금 지급(4조 9,172억원) 및 구상채권 순증가(8,775억원)에 기인한 것이다.

구상채권자산(10조 7,077억원)은 2011년 중 부실화된 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금 및 출연금 지급 등으로 총 7조 2,114억원 증가하였고, 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6조 3,339억원)을 차감하면 순증가액은 8,775억원이다. 투자자산(1조 3,774억원)은 부실금융기관 대규모 자금지원을 위한 운용채권 매도 등으로 인하여 5,492억원 감소하였다.

부채총액은 2011년말 현재 16조 3,611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16조 3,596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16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의 신규 금융기관 차입(9조 2,199억원) 및 채권 발행(1조 2,011억원)과 기타충당부채(5조 7,902억원) 적립에 기인한 것이다.

자본총액은 2011년말 현재 (-)4조 2,086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10조 9,820억원(162.1%)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당기순손실(10조 9,641억원)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 손익 현황

2011년도 당기순손익은 (-)10조 9,64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조 3,475억원 감소하였다.

사업손익은 1조 1,669억원으로 사업수익(1조 4,267억원)은 주로 예금보험료수익(1조 1,381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1,963억원), 사업비용(2,598억원)은 차입금이자(1,817억원), 경상운영비(74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업외손익은 (-)12조 1,310억원으로 사업외손실(12조 1,310억원)은 주로 예금보험금, 출연금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순전입액(6조 3,260억원)과 기타충당부채 순전입액(5조 7,90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1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계약이전 및 예금보험금 지급 미완료 상태인 7개 저축은행(토마토, 프라임, 파랑새, 제일, 제일2, 에이스, 부산)에 대한 손실예상을 반영한 것이다.

나. 공사회계

(1) 재무 현황

2011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211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51억원(31.9%)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59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정기예금 예치로 인하여 단기금융상품이 36억원 증가하는 등 2010년말 대비 40억원 증가하였다. 비유동자산은 152억원으로,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 및 합숙소 추가 임차 등으로 인하여 2010년말 대비 11억원 증가하였다.

부채총액은 2011년말 현재 약 210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51억원(32.1%) 증가하였다. 이는 미지급비용 및 제세예수금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부채(20억원)가 8억원 증가하고,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증가 등으로 비유동부채(189억원)가 43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총액은 2011년말 현재 약 1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0.03억원 감소하였다.

(2) 손익 현황

2011년 중 당기순손실은 0.03억원으로 총수익(857.28억원)과 총비용(857.31억원)의 차액만큼 발생하였다.

총수익은 857.28억원으로 예치금이자 등 금융수익 5억원(0.6%)과 기금전입수익 등 기타의 사업수익 852억원(99.4%)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비용은 857.31억원으로 인건비 500억원(58%)과 경비 357억원(4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환기금

가. 재무 현황

자산총액은 2011년말 현재 10조 5,717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6조 158억원(36.3%)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우리금융 등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지분증권평가손실(2조 9,089억원) 및 케이알앤씨에 대한 장기대여금 순회수예상액 감소(7,617억원) 등 투자자산이 4조 425억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유동자산(1조 6,772억원)의 경우, 예치금을 인출(1조 6,586억원)하고 단기투자증권을 매각(2,698억원)하여 상환기금채권 등 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1조 9,354억원 감소하였다.

부채총액은 2011년말 현재 24조 1,143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3조 914억원(11.4%) 감소하였다. 이는 신한지주 등 보유 지분 매각(4,900억원) 및 케이알앤씨 대출 원리금 회수(5,528억원) 등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1조 428억원)과 운용자산(1조 9,284억원) 등으로 상환기금채권 등 차입부채를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순자산총액은 11년말 현재 (-)13조 5,426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2조 9,244억원 (27.5%) 감소하였다. 이는 순이익 795억원 시현에도 불구하고 지분증권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증권평가손실 등 순자산조정이 3조 38억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나. 손익현황

2011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795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이익이 7,195억원(90.1%) 감소하였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부(-)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중 순이익이 감소한 요인은 2010년도 대비 출자주식처분이익 감소(7,339억원)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5,542억원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0,693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2조 114억원에서 프로그램차감수익 9,421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1조 292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10,693억원에서 관리운영비 106억원 및 비배분비용 49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556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인건비,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 및 비배분비용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795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1조 292억원에서 비교환수익 1조 1,087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 수입 등을 말한다.



〈표 X-1〉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94,722	44,198	유동부채	151,621	27
1. 당좌자산	94,722	44,198	1. 단기차입금	92,199	-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49	2,086	2. 미지급금	-	-
단기금융상품	17,162	14,939	3. 예수금	26	22
유동성매도가능증권	19,944	19,990	4. 선수금	6	-
단기대여금	1,786	1,827	5. 미지급비용	1,488	5
(대손충당금)	(-)805	(-)886	6. 기타충당부채	57,902	-
미수수익	5,348	6,269	비유동부채	12,120	74
(대손충당금)	(-)36	(-)34	1. 사채	12,000	-
선급금	49,174	7	2. 사채할증발행차금	11	-
선급비용	-	-	3. 퇴직급여충당부채	127	100
비유동자산	26,933	23,638	4. (국민연금전환금)	-	-
1. 투자자산	13,794	19,283	5. (퇴직보험예치금)	(-)92	(-)100
매도가능증권	12,667	18,900	6. 기타비유동부채	74	7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67	246	부채총계	163,741	101
장기대여금	40	120	이익잉여금	(-)42,124	67,518
기타투자자산	6	6	당 기: (-)109,642		
회원권	14	11	전 기: 13,835		
2. 유형자산	27	2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	217
건물	6	5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37	652
(감가상각누계액)	(-)5	(-)5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99	(-)435
기타유형자산	170	151	3. 지분법자본변동	-	-
(감가상각누계액)	(-)144	(-)122			
3. 기타의비유동자산	13,112	4,326	자본총계	(-)42,086	67,735
구상채권	107,077	34,963	부채및자본총계	121,655	67,836
(대손충당금)	(-)94,070	(-)30,731			
보증금	105	94			
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121,655	67,836			

〈표X-2〉 요약 손익계산서

- 당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나)	2,730	750	사업수익 (가)	14,402	14,130
1. 사업직접원가	1,852	-	1. 금융수익	1,968	2,161
경상운영비	-	-	예금이자	688	521
차입금이자	1,817	-	유가증권이자수익	1,171	1,557
사채이자	28	-	대여이자	69	63
기금직접원가	7	-	유가증권처분이익	40	20
2. 인건비	500	429	2. 기타의 사업수익	12,434	11,969
3. 경비	378	321	예금보험료수익	11,381	11,808
			출연금수익	12	16
			기금전입수익	129	134
사업손익 (다=가-나)	11,672	13,380	기타사업수익	912	11
사업외비용 (마)	182,043	7,103	사업외수익 (라)	60,730	7,558
1. 기타의대손상각비	64,800	6,922	1. 대손충당금환입	1,540	687
2. 기타충당부채전입액	117,084	-	2. 기타충당부채환입액	59,182	6,871
3. 지분법손실	159	181	3. 지분법이익	8	-
4. 기타영업외비용	-	-	4. 기타영업외수익	-	-
당기순이익 (다+라-마)	(-)109,641	13,835			

〈표 X-3〉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94,664	44,179	유동부채	151,600	15
1. 당좌자산	94,664	44,179	1. 단기차입금	92,199	-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29	2,074	2. 미지급금	-	-
단기금융상품	17,126	14,939	3. 예수금	15	15
유동성매도가능증권	19,944	19,990	4. 선수금	6	-
단기대여금	1,786	1,827	5. 미지급비용	1,478	-
(대손충당금)	(-)805	(-)886	6. 기타충당부채	57,902	-
미수수익	5,348	6,269	비유동부채	12,011	-
(대손충당금)	(-)36	(-)34	1. 사채	12,000	-
선급금	49,172	-	2. 사채할증발행차금	11	-
비유동자산	26,861	23,570	부채총계	163,611	15
1. 투자자산	13,774	19,266	이익잉여금	(-)42,124	67,517
매도가능증권	12,667	18,900	당 기: (-)109,64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67	246	전 기: 13,834		
장기대여금	40	12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	217
2. 기타의비유동자산	13,087	4,304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37	652
구상채권	107,077	34,963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99	(-)435
(대손충당금)	(-)94,070	(-)30,731	3. 지분법자본변동	-	-
기타비유동자산	80	72	자본총계	(-)42,086	67,734
자산총계	121,525	67,749	부채및자본총계	121,525	67,749

〈표X-4〉 요약 손익계산서

- 당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단위 : 억원)

비 용	금 액		수 익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나)	2,598	613	사업수익 (가)	14,267	13,990
1. 사업직접원가	2,598	613	1. 금융수익	1,963	2,156
경상운영비	746	613	예금이자	683	516
차입금이자	1,817	-	유가증권이자수익	1,171	1,557
사채이자	28	-	대여이자	69	63
기금직접원가	7	-	유가증권처분이익	40	20
			2. 기타의 사업수익	12,304	11,834
			예금보험료수익	11,381	11,808
			출연금수익	12	16
사업손익 (다=가-나)	11,669	13,377	기타사업수익	911	10
사업외비용 (마)	182,043	7,103	사업외수익 (라)	60,733	7,560
1. 기타의대손상각비	64,800	6,922	1. 대손충당금환입	1,540	687
2. 기타충당부채전입액	117,084	-	2. 기타충당부채환입액	59,182	6,871
3. 지분법손실	159	181	3. 지분법이익	8	-
4. 기타영업외비용	-	-	4. 기타영업외수익	3	2
당기순이익 (다+라-마)	(-)109,641	13,834			

〈표X-5〉 요약 재무상태표

• 당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5,913	1,912	유동부채	2,012	1,189
1. 당좌자산	5,913	1,912	1. 예수금	1,087	751
현금및현금성자산	2,013	1,189	2. 미지급비용	925	438
단기금융상품	3,621	-			
미수수익	6	8			
선급금	216	670			
미수금	9	-			
선급비용	48	45			
비유동자산	15,159	14,077	비유동부채	18,933	14,670
1. 투자자산	1,976	1,714	1. 퇴직급여충당부채	12,703	10,041
기타투자자산	555	611	2. (국민연금전환금)	(-)2	(-)3
회원권	1,421	1,103	3. (퇴직보험예치금)	(-)9,143	(-)10,038
2. 유형자산	2,734	2,922	4. 기타비유동부채	15,375	14,670
건물	591	460			
(감가상각누계액)	(-)488	(-)442	부채총계	20,945	15,859
기타유형자산	16,988	15,146	1. 이익잉여금	127	130
(감가상각누계액)	(-)14,357	(-)12,242	당 기: (-)3		
3. 기타의비유동자산	10,449	9,441	전 기: 57		
보증금	10,449	9,441	자본총계	127	130
자산총계	21,072	15,989	부채및자본총계	21,072	15,989

〈표 X-6〉 요약 손익계산서

- 당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사회계)

(단위 : 백만원)

비 용	금 액		비 용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사업비용 (나)	85,731	72,837	사업수익 (가)	85,728	72,894
1. 사업직접원가	-	-	1. 금융수익	524	427
기타사업비	-	-	예금이자	524	427
2. 인건비	50,023	42,855	2. 기타의 사업수익	85,204	72,467
3. 경비	35,708	29,982	기금전입수익	85,024	72,388
사업손익 (다=가-나)	(-)3	57	기타사업수익	180	79
사업외비용 (마)	-	-	사업외수익 (라)	-	-
당기순이익 (다+라-마)	(-)3	57			



〈표 X-7〉 요약 재정상태표

- 당 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 전 기 : 2010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 기	전 기		당 기	전 기
유동자산	16,772	36,126	유동부채	59,501	40,470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4,789	6,384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7,982	38,435
2. 단기금융상품	10,457	25,449	2. 기타유동부채	1,519	2,035
3. 단기투자증권	1,398	4,096			
4. 미수채권	13,776	11,151	장기차입부채	181,450	231,263
(대손충당금)	(-)13,721	(-)11,027	1. 공채	180,296	228,985
5. 단기대여금	73	73	2. 장기차입금	1,154	2,278
6. 기타유동자산	-	-			
			장기총당부채	131	126
투자자산	87,838	128,263	1. 기타장기총당부채	131	126
1. 장기대여금	153,710	157,567			
(대손충당금)	(-)136,026	(-)132,154	기타비유동부채	61	198
2. 장기투자증권	70,154	102,850	1. 기타비유동부채	61	198
3. 기타투자자산	-	-			
			부채총계	241,143	272,057
기타비유동자산	1,107	1,486			
1. 장기미수채권	103	112	순자산		
(대손충당금)	(-)101	(-)109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2. 기타의비유동자산	1,105	1,483	2. 적립금및잉여금	(-)669,357	(-)670,151
			3. 순자산조정	10,867	40,905
			순자산계	(-)135,426	(-)106,182
자산총계	105,717	165,875	부채외순자산계	105,717	165,875

〈표X-8〉 요약 재정운영표

- 당 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전 기 :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 익	순원가	총원가	수 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20,114	9,421	10,693	17,284	14,827	2,457
1. 금융정책지원	20,114	9,421	10,693	17,284	14,827	2,457
보험비용	10			120	-	
인건비	-			14	-	
경비	-			7	-	
지급수수료	68			101	-	
장기투자증권처분손실	-			2,148	-	
대손상각비	7,444			551	-	
공채이자비용	12,431			14,117	-	
차입금이자비용	161			226	-	
투자증권감액손실	-			-	-	
기타이자수익				-	6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		1,532		-	8,871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16		-	21	
충당부채환입		-		-	83	
투자증권감액손실환입		779		-	427	
잡이익		4		-	84	
대손충당금환입		81		-	4,455	
배당금수익		1,666		-	872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5,343		-	8	
II. 관리운영비			106			112
1. 인건비			-			73
2. 경비			106			39
III. 비배분비용			49			78
1. 지급수수료			1			1
2. 대손상각비			-			-
3. 평가손실			29			65
4. 기타비용			19			12
IV. 비배분수익			556			766
1. 이자수익			411			637
2. 평가이익			29			65
3. 기타수익			116			64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0,292			1,881
VI. 비교환수익			11,087			9,871
1. 부담금수익			11,087			9,871
VII. 재정운영결과(V-VI)			(-)795			(-)7,990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금융안정의 주춧돌,
국민의 예금보험공사



부 록

1. 예금보험제도 개요
2. 대외평가
3. 2011년도 주요 일지
4. 통계

1. 예금보험제도 개요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나. 부보금융기관

부보금융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도 이에 해당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국내지점을 포함한 모든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포함된다.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예금 등을 말하며, 「예금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그 보호범위가 정해져 있다. 1997년 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호되었던 일부 금융 상품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이 2001년 1월 1일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부보예금 및 비부보예금 현황 〉

(2011년 12월말 현재)

구 분	부보예금	비부보예금
은 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 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 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증금사발행 채권 등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라. 보호한도

1996년 예금보험공사 출범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1997년 1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가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금융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호한도가 다시 축소 조정되었다. 조정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공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

금융시장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예금부분 보호제도로 전환하게 되었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

구 분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1월 1일 이후
	1998년 7월 31일 이전 가입	1998년 8월 1일 이후 가입		
		원금 2,000만원 이하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이하)	원금 2,000만원 초과 (또는 납입보험료 2,000만원 초과)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원금과 약정이자 전액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	원금만 보호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
보 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전액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와 소정의 이자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2,000만원 한도에서 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의 합계액과 납입보험료 중 적은 금액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
		예금보험사고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고보험금은 전액보호		

2. 대외평가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사는 2011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결산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 포함)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기관평가단 및 기관장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았다.

2011년 6월에 발표된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평가에서는 전년과 동일한 'B' 등급을, 기관장평가에서는 전년대비 한 등급 상승한 '양호' 수준을 달성하였다.

나. 기금운용평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한다.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영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2010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및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11년 5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 평가(자산운용부문) 결과 전체 37개 기금 중 9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비계량부문의 경우 연기금 투자분에 운용자산의 95% 이상을 투자 중인 2개 기금을 제외한 35개 기금 중 1위를 차지하였다.



3. 2011년도 주요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23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월 28일	한국증권금융 공개경쟁입찰로 324억원 회수
3월 2일	한국금융안전 공개경쟁입찰로 41억원 회수
3월 16일	삼화저축은행 계약이전
3월 24일	신한금융지주 사후이익공유로 37억원 회수
4월 7일	신한금융지주 배당금으로 22억원 회수
4월 12일	우리금융지주 배당금으로 1,148억원 회수
4월 29일	하이닉스반도체 배당금으로 13억원 회수
6월 29일	대한생명 배당금으로 494억원 회수
7월 8일	신한금융지주 지분 0.61% 매각(블록세일)으로 1,486억원 회수
7월 22일	서울보증보험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3,414억원 회수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8월 26일	부산2·중앙부산·도민저축은행 계약이전
9월 5일	대전·전주·보해저축은행 계약이전
9월 18일	프라임·파랑새·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대영저축은행 영업정지
10월 19일	경은저축은행 계약이전
11월 14일	하이닉스반도체 지분 0.74% 공동매각 계약 체결
11월 23일	부산저축은행 계약이전
1월 3일~12월 29일	제주은행 보통주 장중매각으로 8억원 회수
7월 29일~12월 29일	SG세계물산 보통주 장중매각으로 1억원 회수

4. 통 계

가. 부보금융기관¹⁾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금 용 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은 행	56	53	53	55	54	54	55
(국 내)	(18)	(17)	(17)	(17)	(17)	(17)	(17)
(외국계)	(38)	(36)	(36)	(38)	(37)	(37)	(38)
금융투자 ²⁾	53	53	53	60	115	118	117
보 험	42	43	44	43	43	44	44
(생명보험)	(22)	(22)	(22)	(22)	(22)	(23)	(23)
(손해보험)	(20)	(21)	(22)	(21)	(21)	(21)	(21)
종합금융	2	2	2	2	2	1	1
저축은행 ³⁾	111	110	109	106	106	105	107
합 계	264	261	261	266	320	322	324

주 : 1) 부보금융기관은 영업개시일부터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일까지 금융기관을 말함

2) 자본시장법('09.2월 시행)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09.2월 이전에는 증권사만 해당)

3) 저축은행중앙회('07.12월 부보금융기관에 포함) 제외

나. 금융권별 부보예금¹⁾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십억원)

금 용 권	2010 (B)	2011 (A)	증감 (A-B)
은 행	738,224	850,117	111,893
금융투자	22,207	20,476	△1,731
보 험	322,521	357,921	35,400
(생명보험)	(268,954)	(289,364)	(20,410)
(손해보험)	(53,567)	(68,557)	(14,990)
종합금융	1,225	1,047	△178
저축은행	76,602	51,499	△25,103
합 계	1,160,779	1,281,060	120,281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부보금융기관 등의 예금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다. 상환기금 수입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예금보험료 수입(억원) ²⁾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원)				
	1998 이전 ¹⁾	1999	2000	2001	2002	합계	2007	2008	2009	2010	2011
은 행	1,613	1,975	2,630	4,139	4,361	14,718	502,689,354,851	497,628,429,865	596,495,263,169	681,137,103,049	778,873,175,496
금융투자	-	51	156	218	262	687	15,640,959,000	18,450,538,082	16,924,950,377	21,309,273,266	22,707,528,407
보 험	2,322	1,260	1,781	2,416	2,780	10,559	154,296,293,318	168,253,097,512	178,164,427,938	194,292,108,000	213,663,046,538
(생명보험)	(1,800)	(1,011)	(1,402)	(1,938)	(2,295)	(8,446)	126,530,624,919	136,365,120,000	143,006,160,079	153,430,348,000	165,012,412,538
(손해보험)	(522)	(249)	(379)	(478)	(485)	(2,113)	27,765,668,399	31,887,977,512	35,158,267,859	40,861,760,000	48,650,634,000
종합금융	980	336	233	139	130	1,818	722,757,000	794,110,000	1,013,841,000	1,899,113,000	1,169,424,000
저축은행	2,407	377	323	529	604	4,240	43,004,233,839	49,122,536,517	59,293,898,815	71,512,241,512	71,802,311,638
신 협	402	162	281	407	641	1,893	11,608,513,513	12,910,122,846	13,675,874,192	16,962,417,699	20,479,299,838
합 계	7,724	4,161	5,404	7,848	8,778	33,915	727,962,111,521	747,158,834,822	865,568,255,491	987,112,256,526	1,108,694,785,917

주 : 1) '98년 예금보험료 수입은 '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98년 4월 1일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2003 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은 행	4,775	4,960	4,869	4,987	5,027	4,808	5,291	5,451	4,795	44,963
금융투자	312	336	300	303	256	305	276	284	283	2,655
보 험	3,115	3,403	3,737	4,059	4,455	4,852	5,113	3,307	3,062	35,103
(생명보험)	(2,580)	(2,832)	(3,109)	(3,362)	(3,654)	(3,934)	(4,097)	(2,609)	(2,362)	(28,539)
(손해보험)	(535)	(571)	(628)	(697)	(801)	(918)	(1,016)	(698)	(700)	(6,564)
종합금융	73	17	15	19	22	24	29	34	18	251
저축은행	667	793	974	1,116	1,306	1,483	1,737	2,524	2,331	12,931
특별계정 ²⁾	-	-	-	-	-	-	-	-	1,742	1,742
합 계 ³⁾	8,942	9,509	9,895	10,484	11,066	11,472	12,446	11,600	12,231	97,645

주 : 1) '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11년 4월 설치('26년 말까지 존치 예정)

3) '10년 1월 1일자로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축은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¹⁾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¹⁾	자산매입 ¹⁾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879,614,160	13,909,304,352,211	-	8,106,444,073,801	-	44,219,628,040,172
금융투자	9,976,873,000,000	414,332,026,466	11,270,816,793	2,123,943,660,527	-	12,526,419,503,786
보 험	15,919,758,000,000	3,119,162,832,669	-	349,481,101,882	-	19,388,401,934,551
(생명보험)	5,669,658,000,000	2,751,841,832,669	-	349,481,101,882	-	8,770,980,934,551
(손해보험)	10,250,100,000,000	367,321,000,000	-	-	-	10,617,421,000,000
종합금융	2,693,050,000,000	743,110,579,116	18,271,810,047,468	-	-	21,707,970,626,584
저축은행	100,000,000	416,147,029,007	7,289,213,136,680	-	596,860,000,000	8,302,320,165,687
신 협	-	-	4,740,151,481,096	-	-	4,740,151,481,096
합 계	50,793,660,614,160	18,602,056,819,469	30,312,445,482,037	10,579,868,836,210	596,860,000,000	110,884,891,751,876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포함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00,000,000
	제일은행	5,024,779,614,160
	한빛은행	6,028,600,000,000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00,000,000
	하나은행(하나·보람합병)	329,500,000,000
	조흥은행	2,717,900,000,000
	평화은행	493,000,000,000
	경남은행	259,000,000,000
	광주은행	170,400,000,000
	제주은행	53,100,000,000
	수협	1,158,100,000,000
	농협	96,200,000,000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00,000,000
	하나로증권	2,491,200,000,000
	한스, 한국, 중앙증권	150,000,000
	영남증권	171,700,000,000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00,000,000
	서울보증보험	10,250,000,000,000
	대한생명보험	3,550,000,000,0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658,000,000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42,000,000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32,000,000
	정리금융공사	100,000,000
	대한, 국제화재보험	100,000,000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599,000,000
	소 계	50,793,660,614,160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45,100,982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00,000,000
	농협	87,000,000,000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097,000,000
	제일은행	1,143,259,251,229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1,970,019,950
	부민금고 등	416,147,029,007
	대한화재	50,943,000,000
	우리(舊하나로)증권	743,110,579,116
	국제화재	73,927,000,000
	동양, 삼성, 현대, LG동부화재	242,451,000,000
	녹십자(대신)생명	139,254,000,000
	KB(한일)생명	26,520,812,719
	한국투자신탁증권	78,361,926,245
	대한투자신탁증권	63,011,325,997
	현대투자신탁증권	272,958,774,224
	소 계	18,602,056,819,469

구 분			지원금액
예금보험금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151,481,096
		증권회사(4개)	11,270,816,793
		상호신용금고	1,233,544,136,680
		영남, 한솔, 한국종금	146,321,444
	정리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663,726,024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669,000,000
	소 계		30,312,445,482,037
자산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896,685,840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477,525,891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등)	856,969,163,34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00,000,000
		제일은행	7,906,269,862,070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481,101,882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46,830,489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49,292,558
		현대투자신탁증권	129,978,374,140
		소 계	10,579,868,836,210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860,000,000	
	소 계	596,860,000,000	
총 계			110,884,891,751,876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¹⁾
은 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 험	-	-	-	-	-	-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	-	-	-	-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972	58,513	65,450	567	418	125,920
합 계	2,183	83,055	79,862	5,458	637	171,195

주 : 1) '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누 계 ¹⁾	487,826

주 : 1) 한투증권 등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포함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1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¹⁾	자산매각 ¹⁾	대출금직접회수	합 계
은 행	16,079,684,461,188	69,770,625,266	1,818,139,532,616	5,845,460,085,697	-	23,813,054,704,767
금융투자	1,212,144,785,109	323,045,036,658	7,466,100,396	1,790,559,205,026	-	3,333,215,127,189
보 험	3,415,788,823,995	88,397,817,441	429,821,419,955	232,518,101,882	-	4,166,526,163,273
(생명보험)	1,338,329,304,000	84,766,958,037	365,015,911,182	232,518,101,882	-	2,020,630,275,101
(손해보험)	2,077,459,519,995	3,630,859,404	64,805,508,773	-	-	2,145,895,888,172
종합금융	138,256,473,509	5,931,643,350	8,215,922,494,919	-	-	8,360,110,611,778
저축은행	-	34,127,082,050	5,070,828,773,158	-	596,860,000,000	5,701,815,855,208
신 협	-	401,687,311	3,407,460,406,405	-	-	3,407,862,093,716
합 계	20,845,874,543,801	521,673,892,076	18,949,638,727,449	7,868,537,392,605	596,860,000,000	48,782,584,555,931

주 : 1)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회수 포함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11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

금융권별	1997년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현황					신설 등	현 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1	-	16	48.5	1	18
비은행	2,062	165	223	580	968	46.9	182	1,276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8	2	16	44.4	30	50
• 보 험	50	10	7	6	23	46.0	25	52
• 자산운용	24	6	8	-	14	58.3	71	81
• 저축은행	231	116	28	1	145	62.8	19	105
• 신 협	1,666	2	151	571	724	43.5	18	960
• 리 스	25	3	13	-	16	64.0	18	27
합 계	2,095	170	234	580	984	46.9	183	1,294

자료 : 공적자금관리백서, 2011년 8월

타.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2011년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6 ¹⁾

주 : 1) 조원 단위 표시를 위한 반올림으로 단수 차이

자료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내일을 지켜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제도로써,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농협·수협 중앙회는 보호대상 금융회사에 포함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증권회사 이외에 동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 적금, 원본이 보장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합니다.
- 수익증권, 펀드 등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한 금액
-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예탁한 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하시는 통장, 증권 및 증서에 인자되는 보호여부 문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영업점 창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와 금융상품 홍보물 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금융상품 안내란에도 보호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 보호예금도 일정기간 보험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가처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 연차보고서

K O R E A D E P O S I T I N S U R A N C E C O R P O R A T I O N

발행인_ 김 주 현

편집인_ 양 태 영

발행처_ 예금보험공사

주 소_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_ 02) 758-0114

팩 스_ 02) 758-0220

기획·인쇄_ 우리기획 02) 502-0014

